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0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4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상정된 안건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7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7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7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7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7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7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7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7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7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7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7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7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7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7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27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7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8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8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8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8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8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8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8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28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28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28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28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28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28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28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28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28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28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28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28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28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2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28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28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28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28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28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28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28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28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28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28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8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28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2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2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8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9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9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9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9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9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9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9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29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2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29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29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29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29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29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2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29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29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2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29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29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29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2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29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29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2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2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29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2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2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2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2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2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29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29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29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29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30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30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30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3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30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30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30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3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30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3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3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3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3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30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3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3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30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30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30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30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3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3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30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3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3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3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3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30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30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30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3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30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30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3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3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30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31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31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3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3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3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3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3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3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31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3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31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3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3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3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31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3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3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3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3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31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31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3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31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3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3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31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3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31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3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3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3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31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31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3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3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31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3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31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3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3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3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3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3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32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32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32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32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32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3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3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32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32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3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3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3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32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3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32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32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32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3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32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32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32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32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3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3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3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2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2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2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2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2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3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3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3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3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3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3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3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3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3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3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3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3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3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3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3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3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3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3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3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3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3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3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3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3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3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3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4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4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4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4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4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4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4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4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4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4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4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4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4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34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4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4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4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4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4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4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4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4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4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4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4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4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4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5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5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5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5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5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5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5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5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5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5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5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5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5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5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5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5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5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5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5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5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5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5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5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5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5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5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5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5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5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5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5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6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6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6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6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6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6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6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6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6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6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6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6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6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6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6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6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6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6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6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6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6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7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7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7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7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7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7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7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7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7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7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7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7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7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7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7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7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7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37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37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37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37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37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37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37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37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37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37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38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38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38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38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38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38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38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38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38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38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38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38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38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38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38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38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38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38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38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38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3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38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38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38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38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3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38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38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38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38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38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38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38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3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38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38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38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3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38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39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39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39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39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3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39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39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39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39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39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39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39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39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39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39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39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39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39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39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39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39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39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3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39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3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39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39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3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39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39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3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39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39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39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39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39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39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39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0
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40

4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40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정기국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눠 드린 조세소위 심사계획(안)이라고 한 장짜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해야 될 법안이 나열돼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9권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카운트를 해 보니까 9권까지는 정부안 플러스 정부안과 함께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의원 입법 여기까지이고요. 10권부터 15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정부안과 상관없는 의원님들 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심의해야 되면, 작년에 저희가 8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7권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 2배인 15권까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녁에도 한 10시까지에는 해야 이것을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법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원님들 내신 법안을 한 번은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됴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4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0시04분)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1항부터 제488항까지 이상 488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백삼십몇 건 되는데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법안들은 작년처럼 12월이나 1월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몇 권 할 차례인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오늘 조세소위 심사자료 4권 조특 소득세 분야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과 관련해서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은 상향 조정하며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간접투자 부분 소득공제율은 현행 10%인데 이 부분은 20% 그리고 30%…… 그리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15%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100%, 70%, 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을 두는 안이 제안되었고요. 그리고 적용 기한 연장은 3년에서 5년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와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이 수차례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과 공제 조정을 맞출 필요성이란지 그리고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역진성 부분들 그리고……

○**김영환 위원** 몇 페이지를 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8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립니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 출자에 대한 장려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소득공제율이 수차례 확대되어 왔다는 점과 이러한 측면에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인이 할 때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벤처에 투자할 때 직접투자하든지 간접투자하든지 일정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투자하면 공제를 좀 많이 해 주고 간접투자는 10% 정도 해 주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 사항을 3년 단순 연장하자라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안은 보면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좋은데, 공제율을 더 공제하자 또는 공제한도를 더 늘리자 아니면 지방에 추가로 더 한도를 주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세 가지 다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세제지원이 2021년에 한 1000억 정도로 세수감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2배가 늘어났습니다. 20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5년 만에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율이나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보면 한도를 초과해서 부인된 경우가 거의 한 500명 정도고 대부분은 다 한도 내에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도 자체를 추가로 또 올릴 필요성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비수도권에서 우대하는 취지는 저희는 공감합니다만 이재관 의원님 말씀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쪼개 버리면 현재 가만히 있는 사람도…… 수도권에 5000, 비수도권에 2000 한 사람은 덜 받는데 아무 행태의 변화 없이 이 구간을 비수도권을 쪼갬으로써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2000만 원 추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보다는 이 자체로 이미 행위의 변화가 없어도 세제감이 더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한 이 제도 자체를 연장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기재부 설명 잘 들었는데 실은 벤처의 단체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대개 필요하다는 것은 차관님도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실은 개인들이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상당수가 나중에 보면 스타트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더, 실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조금 더 고소득자들이 이렇게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되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다 날리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개인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낸 안대로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좀 더 올려 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를 스타트업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기업에서 오래 활동해서 가지고 현장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최근의 실적을 보면 벤처투자가 더 죽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벤처투자 규모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 16조 됐는데 24년 말에는 12조예요.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21년 대비 24년 출자하는 기준을 보니까 77%로 감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벤처를 육성해야만이 신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을 양성을 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분야가 또 우리 젊은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비하면 우리 벤처투자 규모가 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창 벤처를 육성해야 되고 벤처기업들 창업시키고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될 때 외려 투자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책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세제 지원을 통해서 벤처를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실질적으로 성과로 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접투자지요, 엔젤투자 아니겠습니까? 엔젤투자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이하, 한도지요, 거기가 한 67%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도를 높여 주면 조금 여력이 계신 분들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수 더 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소득공제구간이 2018년도 이후에 7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그동안에 벤처투자 규모는 2배 정도 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을 2배 정도로 높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벤처투자를 하게 되면 간접투자 이것도 보면 현재 공제한도가 2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억 5000 정도 돼요. 그래서 2억 5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서는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15% 정도로 올리는 게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도 이런 성과를 가져올 정도로는 약간은 높여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우리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벤처나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야 되지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감면 세율을, 그러니까 공제를 높이는 거지요,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조세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 내지는 좀 깎아줘 가지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은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 육성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모태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기재부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산업 육성 정책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벤처,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바이오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재 감면하고 있는 공제구간 자체를 2028년 말까지 3년 일몰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안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제를 올리면, 공제한도를 올리면 세수감소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아까 그랬어요?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1000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는 일몰 연장해서 세수감소효과를, 아까 차관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없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행 제도에서 이미 세수감이 2배가 늘었다, 1000억에서 2000억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1000억에서 20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나온 새로운 의원님들 안에 따른 세수감은 여기 자료에……

○**소위원장 박수영** 5685억.

○**정일영 위원** 이 자료인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3쪽 표에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네요, 5000억.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수감소가 너무나 크고 또 수도권·비수도권 분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2028년, 일단 3년 일몰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조세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기초를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수기반이 약화돼서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수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면서 종래에 좀 과도하게 감세됐던 것들 중에 일부를 정상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는 논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그런데 조세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항목별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기초에서 조세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국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연장할 것도 연장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 기초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결정하지 못할 바에는 조세지출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조세지출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별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 지금 국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확대는 진짜 절제해야 되고 연장도 절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는 이대로 정부안으로 연장을 3년 더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제도개선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유인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간투의 경우에는 현재 공제율 수준이 적정 한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최대 40%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직접투자 같은 경우도 공제금액 구간을 상향한다고 그래서 소액투자자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기대되기는 합니다마는 현 체제하에서 오히려 세수기반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런 지원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제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세수감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제도개선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데이터를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소득 공제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1년 대비 한 2배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추이는 이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 증가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조합결성금액, 9페이지를 보면 23년도, 24년도 제가 보기에는 벤처투자 결성금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세 정책과 함께 R&D 예산부터 시작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저는 정책적인 어떤 과정들을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상이 21년도 대비 2배예요. 무슨 말이나? 결과적으로 결성금액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은 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 이후에 우리 벤처투자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이런 조건들 더 증대했을 때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거라고, 이 증가 추세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안대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이번에 좀 더 보고 조세지출이 급격하게 또 늘어나는 것을 데이터를 한번 또 봐야 된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올리거나 공제한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전에 넘겨진 조세지출과 이전에 넘겨진 재정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예를 들면 5000억, 1조 가까이 이렇게 감당 가능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또 조세지출을 더 늘려서 감면율을 올려 줘야 한다는 쪽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이고요. 28페이지, 29 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현황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내용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인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2025년 말 이전에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10년간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또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에 있어서는 2년, 3년, 5년 연장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제지원을 통해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1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세제상의 유인 외에도 연구 환경이라든지 향후경로, 정주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내국인 우수인력과 세제지원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5년 이상 근무하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했을 때 소득세를 50% 깎아 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3년 추가로 일몰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낸 의원님들 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감면의 요건…… 5년간 해외에 있어야 되느냐, 3년만 있어도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혜택을 50%보다 더 해서 75%까지 주자라는 안이 있고, 그분들이 왔을 때 지방으로 갔을 때 좀 더 주자 이렇게 세 가지 취지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5년 근무가 아니고 3년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을 준 이유는 어느 정도 해외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쌓아서 다시 국내에 와서 이분들이 국내에서 어떤 과학기술이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5년을 줬는데요.

보통 예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5년 또는 7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세제하고 비슷하니까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고민도 들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산에서는 5년을 근무한 다음에 추가로 요건을 더 설정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5년만 맞추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줄이면 3년 만에 돌아오신 분에 대한 어떤 리뷰가 없이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까지 줄이는 것은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감면율도 보면 저희가 50% 감면하는데 그것을 75% 가는 것은 저희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고—75%까지 감면하는 것은—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포르투갈·이탈리아 다 보더라도 50% 또는 30%를 감면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던 분이, 해외에 안 나가고 국내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서 50%까지는 모르겠으나 좀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소득세를 깎아 주는 것은……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을 차별해서 소득세를 깎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지방에 권한 이양한 부분 갖고 각 지자체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면 모르겠으나 국세를 갖고 이렇게 감면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이 제도가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19년에 신설돼서 20년부터 시행인데요. 신고 건수로 보면 20년도에 40건이었고……

○정일영 위원 40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러다가 이게 23년도로 오면서 17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감면 실적도 보면…… 물론 이게 개인소득세를 깎아 주는 거기 때문에 몇백억이 나오지는 않지만 20년에 17억이었다가 23년에 24억으로 감면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감면 기간 확대가 원래 저희가 20년도에 제도를 신설할 때는 감면 기간을 5년만 하다가 이것을 22년 말에 개정을 하면서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한번 늘린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세지출이 크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나라가 AI 시대 글로벌 전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유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큰 유치 대책을 만들고 진짜 인재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세지출이 이 정도가 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 이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 우뚝 서는 새로운 AI 시대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서기에는 이 대책이 꼭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정부안대로 그냥 일단 3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 문제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도 굉장히 한정돼 있

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세수 문제보다는 정책 시그널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AI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쟁탈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타기팅해야 될 게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국내 인력들을 다시 회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혜를 주실 분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한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현행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약간 차등을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방은 고급 인력이, R&D 인력이 전무해요, 전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양성되면 서울로 다 가 버려요. 지금 우리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무슨 용인이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5극 3특 등등등 해 가지고 지방의 새로운 미래혁신산업을 일군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이런 분야 분야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담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 50% 할인한다면 분명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보다 약간 더 차별을 두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방으로 인력을 유인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실은 대구나 광주나 이렇게…… 실은 충남권까지는 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장애를 안 느끼는데 좀 넘어가면, 대개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문제점은 정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없어서 기존의 기술들이 사장되거나 경쟁력을 점점 잃어 가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는 정말 아주 고급 인력들이 지금 내려가기 꺼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 주는 것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최은석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지방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제, 물론 그런 인프라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런 시그널을 던져 주는 것만으로도 지방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수인력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방 인력 부분도 다들 동의는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내에 계속 있었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서가 할 데가 없잖아요. 기재부에서 책임지시고 매년 자료도 분석하시고 비교해 보시고 외국 사례 등을 분석을 잘하셔서 내년에 다시 이런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방 문제는 기재부에서 세감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년, 3년 문제는 발의하신 황정아 의원님 말씀 들으면 요새 기술 발전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5년 다 한 사람 모셔 와 봐야 기술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서 프레시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3년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는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5년을 3년으로 했을 때 세감이 얼마나 되는지 기재부가 한번 계산을 해서 주시면 소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사님 또 발언 신청하셨네요.

○정태호 위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기술선도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선도 성장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인력의 문제인데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계속 지적돼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보여 주고 있는가,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시그널을 보여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늘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제안한, 여러 가지의 발의된 법안들이 저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향후 한 2~3년이라고 봅니다. 이 2~3년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확실하게 뭔가 앞서갈 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몰 연장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러잖아요. 지금 인력이 움직이는 것은 연봉에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획기적으로 연봉을 올려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가 이런 세제 쪽에서라도 뭔가 시그널을 보여 주는 게 저는 효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제안된 법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세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재부가 해서 주시면 소소위에서 좀 더 심층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전반적인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에 대해서 그림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하나……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제로 해결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다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AI 등등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보면 원래 올해는 388억인데 내년에 573억까지 늘려 가지고 해외의 우수과학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인이 유치할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연구비를 국내에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게 기관이 주도가 되어서 유치할 경우에 그 기관에 30억까지 패키지를 지원해서 지원하

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우수한 과학자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감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 4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202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30%의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전액 세액공제 구간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각각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개정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재정난을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42페이지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도가 2023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2024년도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서 세액공제 적용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지원을 확대하는 안으로 많이 개편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10만 원까지 전액 해서 그 윗부분은 15%만 공제하는 것은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는 10만~20만 원 사이는 공제율을 40%로 올려 주면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 세제지원 외에도 해당 법규에 따라서 배당받은 지자체가 30%를 기부금을 기부액으로 일단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물건이든 금액이든 돌려주기 때문에 하여간 답례품을 20만 원을 하면 6만 원을 돌려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40%만 공제해 주시면 10만 원은 전액이고 나머지 10만 원의 40% 즉 4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면 14만 원은 돌려받고 지자체에서 답례품 6만 원을 받게 됨으로써 20만 원을 기부하고 20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니 40%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기 있는 의원님 안들처럼 만약에 전액공제로 가게 되면 20만 원을 기부하고 2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6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20만 원 전액공제한다는 것은 10만 원도 그렇지만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가가 기부를 하게 되는 모습이 사실상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 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례품까지 감안해서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인구감소지역, 특별재난지역, 농촌구조전환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혜택을 주자는 안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구조전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당 농림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폐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법을 고쳐 가지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30%를 추가하기로 해 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하고 겹쳐지면 20만 원까지는 40% 그리고 20만 원 초과한 부분은 30% 공제가 되는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저희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감소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있는 제도가 대부분 그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정부안이 감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좋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정부안조차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법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이 몇 년 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결합이 너무 자세하고 많이 되면 평가가 제대로 될까 의문이 좀 들고요. 결국은 고향사랑을 위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더라도 고향에 기부하는, 일종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공동체 기여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나머지, 그로 인한 답례를 받는 부분이 부당하게 결부돼서 자꾸 평가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효과를 충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현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떨가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일영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확인 좀 하려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2023년에 처음 도입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세제 관련된 것도 그때 된…… 그런데 이게 작년에 또 기부금 한도 상향 조정한 걸로, 그게 1년 만에 다 바뀌었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또 1년 만에 바꾸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번에 한도는 손대지 않고……

○정일영 위원 어쨌든 간 내용에서 1년마다 계속 바뀌네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공제가 확대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안조차도 이렇게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10만 원까지 전액을 하다 보니 10만 원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10만 원 이상을 하려면 추가 세제지원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데 전액보다는 40% 정도 하면 10만 원 구간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정일영 위원 보통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만 하는데 그것을 조금 올리면 한 20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24년 실적이 77만 370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98%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제혜택 때문에 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기부의 유인효과가 예상보다 적지 않나 해서 이것을 20만 원까지 올린 건데 이걸 전액으로 하면 또 20만 원까지만 갈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바꿀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공제율을 아예 전액보다는, 약간 더 공제율을 올리더라도 전액공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에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매년 바뀌서 이상하기는 한데 설명 들으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것 기재부도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이처럼 기부금을 가지고 국세·지방세를 다 합쳐서 전액 세액공제받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세율을 변경하고 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과연 재정지원인지 세제지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도가 설계가 잘못된 형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가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큰 기여를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거기는 세액공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00엔까지는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2000엔 이상을 초과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0% 정도를 국가에서 소득공제로 깎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과분은 누가 내냐면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 재원을 다 대 줍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제 고향인 지방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하면 지방에 준 돈을 국가가 직접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거냐면 자부담을 갖고 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대 주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에 있는 재원을 지방에 보내 주는 꼴이 됩니다. 서울에서 저한테 돌려줍니다, 서울시에서. 한도는 없지만 지자체가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이 있는 주소지에서 그것을 대신 내 줍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000엔 이상은 다 돌아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구십몇 프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0만 원 구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20만 원을 내고 싶은 사람들도 다 10만 원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 하면 그 10만 원 기준이 유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기부금액을 1인당 내는 규모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 결과는 오히려 기준을 상향하면, 예를 들면 20만 원으로 차라리 올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훨씬 더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소멸의 시대에 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획기적인 재정부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 내야 되는데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획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수준을 저는 20만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여기 발의된 이런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하여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20만 원까지는 정부안에 의하면 100% 돌려받는 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세액은 40% 저희가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 대신에 답례품 보태면 뽏뽏 된다는 얘기지요?

○정태호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답례품은 별개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이잖아요. 저는 이게 100분의 100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110분의 100분으로?

○정태호 위원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뭔가 좀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 돌려주면 결국은 재정에서 도와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재정에서 바로 도와주는 게 낫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20만 원까지 정부가 다 재정에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 도쿄의 돈이나 오사카의 돈이 농촌으로 간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재정에서 완전히 다 도와주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정태호 위원님께서 경위라든지 취지는 말씀을 잘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리고 그런데 현행 20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원 전액 공제되고 또 10만 원 넘어가는 40%니까 4만 원, 14만 원이 결국에 공제가 되는 거지요? 그게 정부 돈으로 가는 거고, 국가 돈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60%가 결국에 답례품으로 지자체가 하는 건데 답례품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요. 지방의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소화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정도로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최근에 국세가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 버렸지 그리고 특히 포항이나 여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철강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산업 같은 게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지방세, 법인세분이 확 줄어 버리지 이러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라도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정부가 계획한 안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소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54페이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이고, 2년 연장안부터 5년 연장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 중에 해외이주가 있는데 이거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9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는데 세대나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심층평가 결과 등을 좀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저축제도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3년 연장 현행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 부분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이주법 관련된 부분은. 그건 3년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랜만에 합의됐습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한도·소득기준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3건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안은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공제기준 시점을 월세액 지급일로 변경하고, 소득기준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지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월세액 지급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전체 무주택 기간 동안 납부한 전체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우자 소득공제 합산한 부분도 좀 실질적인 소득기준으로 하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는 비동거 맞벌이 부부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세대주 단독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가 요건이지만 총급여액 합산액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사실상 배우자 소득 없이 단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총급여액 1억 5000만 원 이하

인 근로자 가구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고소득자 중심 귀착 여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액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입법 형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정부안은 월세액 공제에 있어서 혼인 페널티를 기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가 있으면 이걸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말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런 거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안 중에 보면 첫 번째로 박성준 의원님 안은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현재 1인당 공제액이 대충 한 4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 연간 한 200만~27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 원 한도를 거의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로 보면 75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전체 한 3.5% 정도 수준이라 이거를 추가로 한도를 차등하여 올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최은석 의원님 안처럼 무주택자 판단 시기를 월세액 지급일로 하는 거는 저희는 실제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걸 해 보려고 했더니 이걸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 이게 연중에 언제부터 무주택에서 유주택자로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체크하고 또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 팔까 할 때 집행상 좀 난감해서 이거는 저희한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하는 건 전문위원도 잘 보셨지만 저희 연말정산은 개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억 5000을 올리게 되면 개인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부부합산 경우는 그런 취지는 있으나 홀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냥 기준이 1억 5000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저희가 부부합산으로 연말정산 하는 건 지금 현재 사례가 없어서 체계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최은석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월세 살다가 11월 달에 집을 사게 되면 앞에 열 달간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 부분은 저는 국세청에서 충분히 다 감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한번 고민하느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할

수 있을까……

○최은석 위원 제가 그때 국세청에 확인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중에 납부했던 것만 해서 월세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당연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실무자가 국세청 확인한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당연히 그거는 공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매달 매달 이렇게 10개월 치 월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 증빙을 가지고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이거는 해 줘야 될 문제지 열심히 살고 집을 사는 게 우리 지금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의 입장인데 중간에 냈던 걸 안 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누구 실무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지금 월세액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따지고 있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같은 세대에서 세대주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전부 다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떤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하느냐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월세를 지급한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모든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니, 그거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 중산층·서민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중에 월세 살다가 집을 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가 행정력을 좀 더 보완하든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런 걸 해 준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지금 그런 게 계속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건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국세청하고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이 한 얘기도, 그러면 반대 케이스로 집을 들고 있다가 판 경우에는 다시 그걸 또 잡아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자면 말씀처럼 6월 달까지는 월세를 내다가 7월 달부터 자기 집이 있다 그러면 한도조차도 저희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연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절반으로 자를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희 실무적인 고민이지만……

○최은석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국세청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세 세액공제 받는 인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설사 그분 중에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1년에 1만 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국세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국세청에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뭐지요? 이렇게 세무 신고하는 프로그램.

○천하람 위원 홈택스.

○최은석 위원 홈택스가 되게 고도화돼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 입장 한번 확인해서 진행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낸 법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거주를 달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8000만 원, 8000만 원 버는, 1억 6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월세액 공제 다 되는 거지요, 정부안 되면?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수정하는 정부안 말고 기존 안을 보면 홀벌이하는 사람이 8000만 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홀벌이 하는 사람이 8001만 원만 돼도 이거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그런데 8000만 원, 8000만 원, 부부가 이렇게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맞벌이 부부를 좀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실은 누가 더 힘들니까? 맞벌이보다 홀벌이 하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여기는 뭐 분석은 안 됐지만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한 분이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맞벌이하다가 한 명이 소득이 없어지고 한 1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동안 받던 월세 공제액 못 받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육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도 너무, 홀벌이 부부에 대한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1억 5000만 원 돼도 월세액 공제해 주고 혼자 버는 사람은 8001만 원만 돼도 월세액 공제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부에서 혼인에 대한 것들, 페널티 이런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때문에 홀로 버는 가장들에 대해서 되게 역차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좀 해서, 혼자 버는 사람이 훨씬 힘들고 혼자 버는 사람에 대해서도 월세 혜택을 좀 더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 듣고 정부 측 답변 들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데요. 약간 절차적인,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공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과세정보 확보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부부가 혼자 버느냐 맞벌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건 종합적인 이야기를 따로 한번 다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간단한 것, 최은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월세 살다가 자기 집을 샀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실장님 답변이 ‘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신고를 일체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고 그거는 국세청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 검증을 조사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그러면 검증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일일이 다 조사하면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조사한 것을 어느 정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뭐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지…… 중요한 것은 월세 사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저축해서 주택을 샀는데 그전에 월세 살던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맞벌이하고 혼자 버는 그 문제는 참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살아서 세제 혜택을 받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년·2년 하면서 계속. 그게 또 결혼을 조금, 요즘 가뜰이나 결혼율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올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있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요인도 있고 등등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맞벌이하는 걸 곱하기 2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혼자 버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보완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쉽지 않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기재부 세제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결국 공제 기준시점이 과세종료일이 되고 그 과세종료일 현재 아마 총급여액을 따져서 8000만원, 총급여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8000만 원을 넘어서는 또 안 되고 거기다가 국민주택 규모 그다음에 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니 기재부에서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저도 월세는 말 그대로 매월 지급하는 거라고 보면 그 평가도 매월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거나 행정의 어려움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헌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정확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논리적으로 보면 최은석 의원님 안이 100% 맞는데 또 행정처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과 차관님은 국세청하고 이게 가능한 건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홀별이·맞별이 부부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숫자가 잘못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 실적 자체가 아까 100만 건이라고 그랬는데 23년 실적을 보면 77만 6000건이어서 가지고 그 부분은 정정……

○**소위원장 박수영** 그거나 그거나 비슷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6번입니다.

개정안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형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5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 수나 임대등록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서 동 제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감면액이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감면액 변화는 이 제도 말고 나머지 임대사업자제도나 양도세특례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별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기한을 삭제하고 임차개시일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90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임대건물을 2021년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는 경우로서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소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 요건 중에서 임차개시일에 관한 요건이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해서 임차개시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 안은 임대료 인하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조건 없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을 각각 10%p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발생해서 소상공인들 임대료 깎아 주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 실제로 입점업체들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이런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3년 연장을 추진하자는 차원이고요.

여러 의원님 안을 주셨는데 일단 정일영 위원님 말씀처럼 공제율을 70%보다 좀 더 올리면 좀 더 지원이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도 50%를 70%까지 21년에 올리는 걸 논의했을 때도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아까 전에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70%를 더 올리게 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임대료를 100을 내려 주면 세액공제를 80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20이 남았는데 임대료를 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로 24가 세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이 100을 내리면 저희는 104를 돌려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이 너무 한도가 과하지 않냐 해서 그때도 이런 논의 끝에 70%가 딱 적당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은 7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희가 볼 때 최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폐지는 저희는 부담, 영구화하는 건 좀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3년마다 리뉴얼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임차개시일 요건을 삭제해 버리면 이것은 코로나 전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하는 건데 현재도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도가 너무 확대된 것 아닌가 싶어서 신중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일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부안대로 가나요, 아니면 말씀……

○정일영 위원 양해가 조금 덜 돼서……

이게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 제도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임대해 가지고 상가 많이 내놓고 굉장히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어려워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는 좀 그래도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지역경제, 민생경제, 소상공인들은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낸 거예요. 이렇게 착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부담 경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것을 공제를 10%p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차관님은 재정지출을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세수는 오히려 임대료 인하보다 더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 다 합쳐 보면.

○정일영 위원 그리고 일몰기간은 통상 3년입니까, 연장했다 하면 3년?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게 어디 정해져 있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통상 어떤 제도를 시행해 보면 바로바로 일몰을 1년마다 하면 시행성과가 안 나오고 또 5년, 10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 평가가 길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보통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글썄,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의미가 크니까 한 5년 해 주지 그냥 이것도 3년…… 거의 다 100% 그냥 3년입니까? 5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어떤 큰 제도변화가 있다, 예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1년만 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올해 초에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5년으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3년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무튼 저는 요새 하도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 경감…… 그런데 이게 금방 2~3년 만에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확, 좋아지긴 좋아지겠지만 눈에 띄게 확 좋아질까 그래 가지고 한 5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 걸로 보고 정부안대로 갈까요?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정일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논의를 해서 연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수영 작년?

○천하람 위원 예.

○전문위원 정지은 1년 연장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작년에 1년 연장했지요? 저도 이게 작년에도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22년에도 하고 25년에도 했는데 두 번 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25년에는 심지어 본래 기능보다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활용돼서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두 번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특례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특례평가까지 두 번이나 된 것을 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작년에는 1년 했었는데 또 이번에 3년 연장하겠다는? 저는 이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관해서. 심층평가를 하긴 한 것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를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자체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매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또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특별하게 한 제도인데 이걸 새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그런 불이익을 감안하시고 했던 그분들까지는 혜택이, 그분들이 임대를 계속 하는 동안까지는 혜택을 계속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지책 비슷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의 확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 정도까지는 계속 연장을 하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심층평가 내용을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임대인들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얘기를 다른 분석에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료라는 게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가격이라는 건 늘 변동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수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공급이 많을 때 시장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소 때문에, 이 조세지출 때문에 그 시장가격 하락분을 오히려 정부 재정으로 만회를 시켜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지역 일산 같은 경우도 공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시장가격으로는 임대료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의 조세지출로 메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층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책목표가 착한 임대인 도와주자는 건데 공급이 많을 때와 공급이 적을 때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변동될 때를 우리가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세특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 착한 임대인을 어떻게 시장에서 선별을 해내는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지출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조세지출은 엄격히 해야 된다, 이번 올해의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조세지출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논의 속에서는 조세지출과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제도를 확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최대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안 받는 수준일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결단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심층평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방금 요약된 자료를 읽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할 때입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상가임대료 가격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필요하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 제도가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불리 판단하기에는 그 시점에 볼 때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같이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느냐고 했을 때 임차인·임대인의 66% 정도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천하람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요.

○천하람 위원 예.

○박성훈 위원 결국 이게 10·15 부동산대책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일정 부분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정부안대로 일단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료 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저도 김영환 위원님 지적에, 되게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착한 임대인이어서 임대료를 낮추는 건지 아니면 그 동네의 시장가격이 떨어져서 낮추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 낮추는 것의 거의 96%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코로나 때는 한시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우리가 특례로 했던 건데 그런 상황적 요건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유지한다? 저는 이거 정당화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그냥 명목만 가지고 좋은 취지니까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원칙에 안 맞

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 계속 할지에 대해서 다시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가격 기제에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짧게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실효성 낮다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은데요. 9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써 놔는데 ‘제도의 최종적 지원대상은 임대인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국세감면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 지원대상은 임대인이 아니고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산편성 등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이게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따로 투입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부안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하가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하된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로 임대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인하한 분이나, 이것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노리는 것은 바로 후자 아니겠습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내리는 분이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살리되 집행 단계에서 인하 폭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제도는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집행을 사실 하기는 국세청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입장이 나누어지고 또 정일영 소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기에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심층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부분이고, 이거는 소득세법 심사 때 같이 하셨던 부분으로 잠정 합의된 안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안건은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이미 잠정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항목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하는 부분과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제도 관련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고요.

112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거는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안, 5년 연장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동 제도가 과표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서 제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제 규모가 현재 4.6조 원 정도 수준으로, 2026년도 잠정치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 4.6조 원 정도 수준인데 공제가 일몰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도가 25년 이상 장기 운영됨에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이 공제제도를 보편적인 공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은 같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나번까지 다 보고하신 건가요? 나번 같이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나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번은 소득공제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5건의 안건이 있고요, 121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에 의원님 안, 이수진 의원님 안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은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 등을 상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정에 의원님 안, 이수진 의원님 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율을 각각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공제한도도 각각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안, 양부남 의원님 안의 경우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공제 한도가 나뉘져 있는데 이 부분을 상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같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아니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수요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제 체계의 역진성을 감안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측면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수감 효과라든지 그리고 현재 저출생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재정 지원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도 같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가목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제도 연장 3년 하는 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표 양성화 취지는 많이 완화가, 그 의미는 약해졌지만 이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것을 소득공제 형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

금 현재 이거를 일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목에 있는 각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자녀 양육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세부담을 더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잠깐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1에 비해서 한참 낮은 0.7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소득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고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을 쪼개서 총 급여 7000만 원 전후로 쪼갠 다음에 1명당 50만 원씩 그래서 2명 넘어가면 최대 100만 원 그런데 고소득층인 7000만 원이 넘어가면 2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안을 보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공제 한도를 올리자라고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조세지출이 현재 4조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도를 바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또 한정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안처럼 자녀 수에 따른 공제율을 올리는 것도 추계된 내용을 보면 1조가 넘는 추가적인 세수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저희는 한 3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제율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3자녀 이상도 자녀 수대로 다 가자라는 안이 또 있습니다. 3자녀에서 더 추가로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자녀 이상 늘리면 세수감 자체가 500억이 추가로 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면 과연 생계비가 비례적으로 늘 것이냐?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보면 자녀 하나 생길 때는 없을 때보다 43% 생계비가 늘고 자녀가 둘이 되면 하나일 때보다 28%가 늘는데 그다음부터는 9% 정도로밖에, 늘는 게 확 줄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자녀까지도 인별로 다 할 거냐?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2자녀 이상이면 100만 원 또는 50만 원 한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자녀 방침에는 별로 안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부분도 고민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9-가번의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오늘 조세지출만 계속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녹음해 놓고 가세요.

○오기형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국감 때 조세특례 심층평가 여섯 가지 항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조 원 이상 되는 게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 존재 의의가, 제도의 취지가 이제 많이 달성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안 되냐 그런 지적인데, 그때는 6개인데 오늘은 제가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심층평가했던 것 10개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게 조세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

장 엄격하게 같이 토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1조 이상 되는 것 죽 보니까 6개가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되는 게, 조세지출 관련해서 이번에 다뤄야 될 것,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신용카드입니다. 지금 보고서 상으로 한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내후년이면 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는 세원 발굴, 세원 확보, 투명성 확보인데 그것은 다 달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확대되는 논의 자체는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축소 방안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 말씀은 신용카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일반적인 소득정산 과정에서 어떤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면 완전히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행 유지보다는 뭔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계속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어떤 제도가 제안됐든 간에 확대는 아니다, 동결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일부에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통폐합 방향이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폐합 중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제안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공감하는 것은 결국 다자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을 차라리 없애는 한이 있어도 다자녀 부분을 좀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 개편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이번에 한꺼번에는 못 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논의의 틀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래의 조세지출보다 늘어나는 결정은 다 멈춰야 된다. 그리고 일부라도 축소하는데 다자녀 중심으로 가는 방법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비판과 압력이 있겠지만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단계적으로 클로즈 아웃(close out)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가목에 대해서 재정 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도 위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에는 일몰 연장을 하고 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4조라 그랬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4조 2000억 정도……

○소위원장 박수영 4조 2000억, 크긴 크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일영 위원 가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예, 가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적용기한 연장을 그러면 이거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오기형 위원님은 안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도 하되 율을 낮추든지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기형 위원 총액을 줄여야 된다.

○정일영 위원 하되 총액은 줄이는 방안을 찾자?

○오기형 위원 총액을 줄이는 결정을 해야지 늘리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고, 적용기한 자체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논의를 해 보고 있는 것이지요. 3년 할 거냐, 1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일영 위원 3년, 정부안대로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1999년에 도입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도 제 기억으로 이거를 폐지하려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못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이거를 당연한 공제제도로써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없앤다.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대타협, 정말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조세특례 규모 찾아보니까 국세 감면액이 벌써 한 78조 원, 80조 원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국세 감면액 전망치 비율로 따져 보니까 법정한도가 15.6%인데 15.9%,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도의 목적, 과세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겠다 이런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야가 머리를 같이 맞대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게 지금……

○박성훈 위원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어쨌든 여러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세지출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특히 신용카드 관련해서 사실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많이 쓴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소득자가 많이 받는 구조잖아요,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기본공제 한도를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초과, 다 확대하는 부분인데 이런 방향은 저는 정부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고 더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부안이 부양자녀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2명 이상은 사실은 통쳤어요. 그런데 가족 수가 늘면 더 많이 쓰

게 돼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다자녀정책이 맞나 싶기도 해요. 그냥 2명만 낳으라는 건가요, 이 조세지출은? 그래서 정부의 정책 설계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자녀에 혜택을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2명만 낳고 끝내라는 건지. 그러니까 정책 설계도 저는 이것도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세지출의 강화…… 만약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것도 소득 구간을 조금 더 엄밀하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구간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구간의 소득 구간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조세지출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제출한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금액을 상향시키는 것도 저는 만약에 그 설계라면 자녀 수대로 비례적으로 상향시켜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나목까지 같이 말씀 주셨는데 그다지 가목은……

이게 지금 우리가 심층연구를 해서 2주밖에 안 남은 테드라인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절충안이지만 1년만 연장하고 1년 사이에 여야 간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한번 도출해 본다든지…… 그것은 결국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이게 반발이 굉장히 세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1년을 또 연장한다든지 하면서 자꾸 사회적인 어젠다를 만드는 역할은, 여야 간에 한쪽이 하면 한쪽이 얻어 맞게 돼 있으니까, 이 구조가요. 함께 노력은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들……

정태호 간사님 손 드셨는데 말씀……

○**정태호 위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이렇게 했을 때 올 충격이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걸 3년으로 해 놓으면 또 논의 안 하고 3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한다라는 것 그래서 기재위에 연구 TF를 만든다 그런 정도의 제기를 하고 3년으로 그냥 가자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

갑자기 1년밖에 안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정부가 줄일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고민이네. 저는 하여튼 이것 손을 봐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4조나 되는데다가 신용카드도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건드리면 화이트칼라 중산층 이상이 전부 반대해서…… 99년도인가요? 이것 박근혜 대통령 때 화이트칼라 난리가 나서 접었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정일영 위원** 방향은 오기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1년으로 하면 당장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이걸 없애는 걸로 바로 나갈 겁니다. 그 충격이 클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이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좀 뭐한 얘기지만 이재명 정부가 마치

세금 많이 걷는 정부로…… 저는 여당 입장의 한 위원으로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도 아닌데 그걸 1년이라는 걸 해 가지고 국민들께 충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어때요? 3년으로 연장을 하고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효과가 귀착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1년 내에 마련한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기재위에서 좀 논의를 활성화……

○**소위원장 박수영**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점이 있거든요. 세 부담 문제도 있고 고소득 귀착 문제도 있고 다자녀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협의체는 뭐든.

○**정태호 위원** 그걸 기재위에서 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부대의견 같은 데 넣어 갖고 하는 방법.

최은석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조세지출 말씀하신 오기형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어쨌든 세원 발굴 차원에서 되게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실은 소득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조세지출했던 것보다 세수 확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저도 기억나는데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쓸까 다들 이렇게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가재정을 이렇게 튼튼하게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셀러리맨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투명세원 발굴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없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든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3년 정부안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소위원장 박수영** 바로 없앤다는 것 아니고 강경론자인 오기형 위원님도 연차적으로 서서히 페이드아웃(fade-out)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최은석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정부가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소득자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것 7000만 원 받는 사람이 애 3명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소득자에 대한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은 지금 어찌 보면 고소득자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니까 연봉 한 2억 정도 넘어가면 이것 혜택받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물론 아주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고소득자라고 칭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만약 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거라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한 70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봐 가지고 3명 이상에 대한 혜택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9번 안건은 일단은……

○정일영 위원 나도, 지금 얘기 끝난 겁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나도 지금 있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정일영 위원 아니, 감안하신다고 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중간에 다 섞여 나와 가지고……

○정일영 위원 간단합니다.

정부 측에 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고소득자 얘기, 7000만 원 말씀들 있었는데 이게 신용카드 사용하는 전액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도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5%를 초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일단 문턱이 있고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되고……

○정일영 위원 그다음 또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공제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공제율이 있고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기본공제 한도가 70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이고요,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 원.

○정일영 위원 예, 300만 원. 알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무조건 다 쓴다고 거기에다 퍼센티지 곱해 가지고 공제받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자녀 수, 아까 차관님 무슨 통계 가지고 세 자녀가 생기면 가계지출비가 한 9% 증가한다 그랬던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국가데이터처……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무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가계동향조사……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게 믿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1명이라도 더 낳도록 모든 정책을 다 써야 된다고 봐요, 9%든 5%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3명 이상 낳으면 더 늘려 줘야 된다고 봐요, 더 추가로. 그래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논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소소위에서 차

관념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아마 양쪽의 당 원내 대표들과도 상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충격과가 큰 것이라서 함께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논의,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10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139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일몰 도래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5000원 미만의 거래이면서 전화망을 통해서 발급하는 경우에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1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 2021년도 이후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2021년도 87개에서 2024년도에는 125개의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가맹점의 영수증 발행 비용 보전의 그런 조세특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제도는 저희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시스템을,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그 여력이 없어서 못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만약에 5000원 미만 거래를 카드로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현금영수증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4000원 끊었습니다’라고 알려 주면 그걸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제지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영세사업자에게 실비 성격의 비용을 처리해 주는 조세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도 굉장히 작습니다. 24년에 17억 정도 됐는데 이 제도가 그래도 일부가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것을 없애기에 고민이 돼서 저희는 단순연장으로 들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세상인 도와주는 거니까 이것은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번에는 심사자료 몇 권입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5권입니다. 5권이고 조특 소득세(양도소득세·금융소득세) 분야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에 그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내용이고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 법인세법 13조 조항 내국법인 등 관련 내용도 같이 있어서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 벤처투자,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이 정부안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5페이지입니다.

2번, 농업법인에 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세제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도 방식을 전환해서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를 할 때 이월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당시에는 농업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수인인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제도가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출자가 좀 지연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측면이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초과하는 현물출자를 할 때, 사실 현물출자 말고 주식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흐름은 없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농림부에서 피하고자 하는 건 어떤 조합 대형화입니다, 영농법인의 대형화. 그런데 여러 큰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체된다고 하니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이월과세로 해서 일단 당장은 안 내고 나중에 그걸 팔 때 내는 걸로 하고 그 파는 주체는 농업법인이 내지 개개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추가적인 부담이 안 생기는 제도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내용이 2년부터 10년까지 연장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서 관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축산업 폐업과 관련된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축산기업 규모화 촉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 주신 것처럼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고 3년 연장을 저희들은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21페이지고 4번 항목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 2년 연장안부터 10년 연장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부분이고 동일 취지로 어업용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장려를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양식어업인의 경영 지원과 젊은 어업인의 유치 등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3년 연장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어업용 토지가 됩니까? 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육상에서 하는 양식을 위해서 토지가……

○소위원장 박수영 육상에서 하는 양식? 양식을 육상에서 합니까, 바다에서 안 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민물양식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민물양식을 강에서 하면 그걸 어업용 토지로 보나요?

○김영환 위원 장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뱀장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논을 파 가지고 새우를 거기에서 키운다든지……

○정일영 위원 장어도 있고 송어도 있고 그래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 새우양식 같은 것?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8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이고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2년부터 5년 연장안까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련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해제를 위한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현재 지정안에 대해서 연장을 했는데 사실 해제안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건 다 연장되는 걸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나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토지 협의매수,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한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돼 있는데 세곡동이든 양재 부근 등등 그게 해제돼서 협의매수·수용되는 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사실 거기 소유자들은 대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주택공급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 경우에 사실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되는데 그 양도차익 거기에 대해 또 세금도 감면해 주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통상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협의매수·수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 싶지 않은데도 택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팔게 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은 개발구역 해제가 됐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개발구역 해제가 목적이 아니고 해제하고 그 토지를 가지고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을 해서 뭔가를 할 텐데 그러면 토지……

○정일영 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나 지토위 이런 데에서 수용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개인,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보는 건 후단, 그러니까 협의매수·수용 이건 개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일종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어디 토지 수용이라든지 개발 절차를 좀 빨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개발구역 해제 자체가 혜택인데 왜 또 뭘 주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후단, 그러니까 협의매수·개발 이런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담당 국장님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보고를 직접 하세요. 일어나서 국장님이 하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이게 사실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토지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고요.

○정일영 위원 공익사업?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고 그 해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공익사업이란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를 들면 주택 건설도 해당이 될 거고요.

○정일영 위원 주택도 다 거기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다른 공익사업용으로……

○정일영 위원 대규모 택지개발하고 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택지개발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이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그렇게 해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도가 양도소득세는 1년에 2억 원 한도로 그렇게 감면이 됩니다.

○정일영 위원 2억 원 이내의 감면이 된다고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이걸 좀 문제가 있는데 더 따지기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

○소위원장 박수영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땅값이 안 오르고 있었는데 해제가 된 상태에 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돼서 수용이 되면 양도차익이 클 것 아닙니까?

○정일영 위원 크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그걸 감면해 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때 불이익을 봤던 걸 감안해서 해제의 경우에도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동안 불이익당한 걸 만회, 뭐랄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용을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양도하기 싫더라도 이게 수용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한 것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국장님이 아까 2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율이 40%잖아요. 그런데 40%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될 수가 있는데 2억이라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공익사업을 위해서, 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정이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아닌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강제수용을 당하거나 협의매수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통 40% 정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토지를 팔게 됐으니까 양도세에서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줬는데, 그건 자기가 개인 토지를 갖고 있어서 그걸 개발할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는 땅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감면이 맞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 이걸 몇십 년 동안 묶어 있었던 거라 개인 재산으로 손해 본다고 할 수 있지만 공업용지든 그린벨트든 국가나 시민들을 위해서 묶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구역인데 그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고가도로 그것 철거하면 그 밑에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유자는.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도 어느 날 갑자기 해제가 됐어. 그래서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해.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게 창출이 되거든요. 그 이익도 막대한 이익인데 거기에 더해서 양도세까지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제한 장치를 둔 게, 양도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도를 둔다든지, 1년 안에 그 협의매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지 그런 일종의 보완 장치를 두기는 됐는데요.

○정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양도차익이 땅 많이 가진 사람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겠지, 그 이상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감면해 주는 세액은 2억이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억 원입니다.

○정일영 위원 1년에?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캡으로 감면율을 40%로 썩워 났지만 양도세액의 캡은 2억이라는 뜻이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캡은 1년에 2억, 5년에 3억입니다. 1년에 2억, 5년에 3억입니다. 5년 합산해서 3억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도 웃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납득이 되셨습니까?

○정일영 위원 다는 안 됐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들어 보니까 정부 측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소위원장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안에는 지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안은 없는데 해제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안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안과 의원님들 안을 모아서 함께 처리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군요. 해제안은 정부안에 없고 의원님들 안에만 있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지정과 해제를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정과 해제를 동일하게 3년으로 해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개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이걸 37·38·39페이지까지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국토위원회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어서 11월 28일부터 이 프로젝트 리츠 형태의 구조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40페이지의 검토 부분입니다.

토지 소유주 등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서 PF사업을, 원래 당초에 PF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출을 통해서 토지·건물 매입 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주주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PF의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의 안정성 확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신설안이네요? 정부 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41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본 구조 중 왼쪽에 브릿지대출이 27% 끼어 있는 이 형태로 대체로 부동산, 주택사업이나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자본을 거의 태우지 않고 초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브릿지론이라 해 가지고 본 PF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대출해서 이걸 사게 되는 건데

요. 이 사업이 나중에 사업 승인이 나고 본 PF 가기 전까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은행들은 이 사업에 대출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신전문회사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에서 증권사들이 여기다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면서부터 본 PF가 못 나가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이 굉장한 손실을 입고 흔들리게 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이분들이 만든 채권시장에서 요동이 치다 보니까 지난 3년 전에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을 30%는 가져라.

그런데 주택사업자들이 30%를 가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을 키울 수 있느냐? 결국에는 토지 주인들이 이 땅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현물출자해서 주주로 들어오면 자본은 튼튼해지고 굳이 브릿지론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제도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현물출자를 할 때는 과세가 생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현물출자가 안 되니 이 부분에 과세특례를 주자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태호 위원 이연만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과세이연,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다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은 45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이고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접지역과 관련된 요건에서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동과 면으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양도소득세 연접…… 읍면과 관련해서 같거나 연접한 경우에만 관련 연접지역 요건으로서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과 면이 연접하는 경우도 행정구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제도의 취지는 당연히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 이걸 1주택자로 보고 저희가 과세 혜택을 주는 차원인데요. 그러면 농어촌주택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가는 것 이건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주변의 걸 사면 이 혜택을 못 받게 막아 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법규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면하고 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과세 혜택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동·면이 붙어 있는 경우도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농어촌주택을 사는데 꼭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붙어 있는 연기군에서 농어촌주택을 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을 사는 건 진정한 취지가 아니다, 사실은 투자의 의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면 인정이 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그게 꼭 그런가요? 농어촌주택이 지금 빈집도 많고 상당히,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농어촌주택 사는 걸 수도권 사람들이 가는 것만 상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행 규정에서도 면·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시 계룡면에서 공주시 반포면 하는 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한데요, 세종시 산울동에서 세종시 연기면은 되니 이게 안 되는 쪽이 더 맞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일영 위원 저 잠깐만……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이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거예요, 전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걸 2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일영 위원 2주택자로? 그러니까 전액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금 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이 취득 당시 주택·토지 합계액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지역도 묶고 가격도 묶고 조건을 이렇게 묶어 놔는데, 이것 되게 어렵게…… 이런 건 좀 풀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농어촌에 너무 빈집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기재부는 농림부하고 의논합니까, 국토부하고 의논합니까?

○기획재정부재정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한 건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농어촌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 일단 보류해서 다시 재논의할 테니까 관련 부처한테 현실을 좀 물어보세요. 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막 수도룩합니다.

○정일영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도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50페이지, 8번입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3년 연장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것 정부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부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원님들 안도 있지만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57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이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정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정을 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모았을 때 이 부분에서 종부세를 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 주면 5년 이내에 짓지 않으면 그 빼 줬던 걸 다시 원위치해서 추정을,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택을 지을 의도가 없지 않았냐, 세금만 위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본인들은 지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5년을 도과한 케이스가 생기고 결국에는 행정관청에서 어떤 절차와 관련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이 생겼을 때도 추정을 하게 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여기는 추정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추정 예외사유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시행령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렇게 규정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천재지변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기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이와 유사한 사유’ 이렇게 이런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최기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각주 29번에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2018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를 들면서 법을 바꾼다라고 하려면 이 판례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사례로 논란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판례를 찾아봤는데 이게 굳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다툼도 없는 사유를 만들어서 단서에 넣으면 이걸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이거는 과한 입법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담당 과장님이 보고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례로 나타난 케이스 하나밖에 없습니까? 좀 더 자료조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김영환 위원 이때 대법원 판결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환경영향평가.

○김영환 위원 환경영향평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안을 보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잖아요. 그런데 천재지변과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 추가해야 될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사유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승인이 지연됐든지 그런 사유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등’으로 표시되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또는’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김영환 위원 ‘또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좀……

○소위원장 박수영 등치관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최은석 위원님 아까 손 드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실은 김영환 위원님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는 ‘천재지변 등’이라 그래서 정말로 천재지변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하니까, 지금 여기 정부안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법안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택건설사업자가 인위적으로 그것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영향평가 같이 조금 이렇게 애매한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의로 지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러 낼 수 있게 정교하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고 정말 어떤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천재지변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금 이게 지체가 되는 걸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니까 민원이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자재라든가 사업이 급증해 가지고 그냥 움썹달썹 못 하는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PF가 일어나지를 않고 이런 사례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넘어서는 그런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대로 좀 여기에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시행령, 포괄위임이 아닌 구체적인 위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논의 때까지 기재부에 기회를 줘서 좀 더 문구 수정 그다음에 관련 자료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10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해 주는 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현행법상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 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증세법상에서도 논의하셨던 바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올해 3월에 넥스트레이드로 출범을 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등 고려하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ATS 개설되면서 추가한다는 내용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거기에 그 시장 내의 시장조성자에게도 유가증권시장하고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6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조성자 외에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연장하는 부분으로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 등 감안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벤처회사에 대한 지분 양도 시에 증권거래세 면제하는 내용하고 파생상품이나 주식시장에 현재 있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일몰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기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또 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시장조성자는 당연한 건데, 시장조성자에 관한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좀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벤처랑 시장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영 자, 양해된 것으로 보고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71페이지입니다.

금융소득세 분야이고 첫 번째 안건은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해서 1억 원 한도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4% 세율로 분리과세 특례를 하는 제도이고요. 이 부분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 3년 연장안과 5년 연장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인프라펀드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인프라펀드의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모 방식의 확산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BTL·BTO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만 혜택을 연장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안이 있지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안은 2년부터 5년 연장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황과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서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가산금리와 이자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천하람 위원님 의의제기 있으십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이거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조세지출 실적이 연간 6억 이렇게 되거든요. 3억이기도 했다가 6억이기도 했다가 저희가 보니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고 이게 실적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왜 미미한지를 봤더니 이게 가입 대상이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기준으로 삼는 연소득에 비해서 사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제도를 거의 활용을 잘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김에 이거 기준도, 가입 대상 기준 금액도 좀 현실화를 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기재부 입장은 어떠신지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일단 가입자가 적고 세제혜택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의 제도가 생긴 것이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서 늦게 생겨 가지고 전체 비중으로 보면 낮은데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는 가입자 수가 39만 7000이었다가—청년우대형 종합저축만 보면—25년 8월까지 보면 148만 6000 구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혜택이 지금 현재 작은 이유는, 이 세제혜택의 내용이 뭐냐면 이자소득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걸 만기가 돼서 돈을 찾을 때 세제혜택의 효과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만기가 많이 도래하지는 않은 측면도 있고 지금 이게 3억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건 중도에 해지한 그런 경우에만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가입 대상 소득을 너무 낮게 해 놓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청년들 이걸 안 해 줄 이유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아무튼 약간 의문이 가입 대상 소득 기준은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거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천하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이자소득이 이렇게 실제 적은 거는 아직 만기가 안 됐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지요? 이거는 그때그때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청약저축은 보통은 2년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있는데 그거를 찾지 않고 보통 분양을 받을 때까지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도걸 위원** 그걸 복리로 해서 계속 이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복리인지 단리인지 제가 정확히 그 부분 파악은 안 되지

만 계속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는 세제혜택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안 나타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게 맞나요? 실무자들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금융세제과장입니다.

이자는 계속 쌓이는데 가산금리는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얼마의 가산금리를 받을지가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그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혜택이 결정됩니다. 그중에 계속 이자가 쌓여 가는 동안에는 세제 지원이 발생하지가 않고요.

○안도걸 위원 카운트만 되고? 숫자 카운트만 되고?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예, 누적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만기 때 최종적으로 해지하거나 아니면 중도해지할 때 세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지적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님이 주신 총급여 3600만 원, 즉 월 세전 300만 원 받는 사람 이하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천하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 세전 300.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아까 저도 처음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을 했는데 설명 들어 보니까 일단 잠시 제도 운영을 한번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이 제도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018년에 도입됐는데요 19년부터 24년 사이에 처음에는 20만 명 정도 하다가 아까 본 것처럼 400%까지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인기를 좀 얻는 걸로 저희는 보면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월 소득 300만 원도 2018년에 세팅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지금 25년, 7년이 지났는데 괜찮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굉장히 빠르게 느는 모습이라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재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 이어서요.

○소위원장 박수영 148만 명입니까? 한 구좌가 한 명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1년 더 지켜보고 또 내년에 한번 보시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2년부터 1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농

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축기간은 3년에서 5년이고 연 240만 원을 납입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3년 연장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하람 위원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정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농어민이면 소득 상한이 없게, 한도가 없게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로…… 83페이지인가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고소득인 농어민에 대해서까지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세 농어민이면 영세 농어민, 어떤 기준을 좀 정해야지 이것을 그냥 다 열어 두는 것은 안 맞다라고…… 특히 앞서 본 청년 그런 것과 저는 형평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소득기준은 없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농어민으로 일단 제한은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비과세 소득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그러니까 통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서의 파악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소득은 아예 비과세 소득이고 그다음에 작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연매출 10억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게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의견에 ‘장기적 재정여건 고려 시 대상자 중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소득 제한이 있잖아요. 간접적인 소득 제한기준이 건보료 월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 5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이 부분이 과하다는 측면보다는 아까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한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에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정비안이 같이 제시가 되었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해서도 소득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정해 주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였고요.

다만 비과세 지출 내역을 보면 한 45억 원 정도여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득요건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소득요건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간접적으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는데 그게 25년으로 보면 30만 460원입니다. 결국은 이 건강보험료가 나오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법상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편입을 시켜 가지고 규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외적으로만 보면, 법만 보면 요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이 지금 다른 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농어가, 농민·어민은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건이. 그렇지요? 여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 세제지원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농민과 어민의 재산형성,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어민에 한해서 이 저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고 농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농어촌의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등등 감안하면, 또 기존에 비과세 적용하던 것들이니까요 연장하는 정부안에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농어민 중에도 고소득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캡을 씌우는 것이고 그 캡이 건보료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보료 30만 원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것은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캡이 하나 있는데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월 납입한도 자체가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보완장치는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도가 20만 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천하람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도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규정에 있는지.

○**소위원장 박수영** 어디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법률에 정하도록 했고 그것을 금융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는 있는 것인데 조특법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안도걸 위원님 지적도 사실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음번에는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은 그냥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번 올라올 때는 검토해서 오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에 담아 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박성훈 위원** 다만 조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목돈마련저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기본소득 형태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목돈 마련이라든지 농어가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 당국에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소득 그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랑 협력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어민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장 같이 검토하기는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범실시 지역이라도 함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확산될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데 그 제도는 일단 이 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한 법에서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4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85페이지입니다.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다수 의원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중에서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하는 연장안이 정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거주자이기만 하면 관련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기준을 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대다수가, 한 93.6% 507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거주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부담들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비과세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일단 그 제도 자체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이런 경우는 저희는 그대로 연장할 계획이고요. 65세 이상은 현재는 전원을 다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좀 제외하고 제도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에 전체의 96%가 지금 이 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비과세 규모가 2021년에는 2500억 정도였는데 24년에는 9000억까지 비과세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조세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이지만 좀 지나면 이게 40%까지 올라가는 추계가 있다고 보면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정지출량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최소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빼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기초연금 수급하는 사람을 넣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처음으로 약간 단계적인 제한을 해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여서 더 과감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연도별로라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통계에 관해 여쭙게요.

지금 저축액 중에서 현재 제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상위 30% 거기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이 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저축액 중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숫자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수가 24년도에 약 9000억이 나갔는데 저희가 이 제도로 인해서 세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을 약 1500억에서 1600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고령 가입자가 519만 명입니다. 그 비율로 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100만 명 이상 빠져나가고……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았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고민할 때 과연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또 그 소득을 전부 여기의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112만 원을 공제한 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케이스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노인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437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63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소득이 없고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단독가구인 경우에 공시지가 8.1억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로 치면 한 11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가구 같은 경우에 12.2억의 공시지가를 가진 분들까지는 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는데, 물론 여기서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부분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가지 첨언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세제실장이 대략 추계해 보면 노인, 고령자 중에 한 15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존에 가입된 부분이고 이번 제도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겁니다, 그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분들은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규 가입자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실망하시겠는데.

어쨌든 정일영 위원님이 손 드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체로 바람직한 것 같은데 확인 좀 할게요.

이게 과세특례인데 이 저축에 가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5000만 원입니다.

○**정일영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얼마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돼요, 액수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금액이 조세지출액인데요, 결국 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그게 24년도에 9000억의 이자 감면이 됐다는……

○**정일영 위원** 아니, 토털은 그런데 개인, 예를 들어서 65세 A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비과세받는 종합저축이 한도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5000만 원.

○**정일영 위원** 그러게. 5000만 원까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인당 평균……

○**정일영 위원** 1인당, 1인당. 개인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맥시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맥시멈이 5000만 원이고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비과세되는 이자가 얼마예요? 물론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5000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보통 3~4%니까요
개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본인이 가입을 했으면 150~200 정도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돼 있는 65세분들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그러니까 70%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고 30%는 과세가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그분들은…… 이것은 가입 자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가입이 됐는데 과세를 한다는 게 아니고 가입 자격에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아예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신규 가입을.

○정일영 위원 신규 가입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기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분들은 괜찮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신규 가입을 못 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만큼 다른 예금으로…… 이게 예금인가, 적금인가? 하여튼 저축에 갔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은 소득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면 1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똑같은 이자를 준다고 그러면 일반저축을 가입하면 연……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자소득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얼마만큼 비과세되느냐 그걸 물어봤던 건데, 아무튼.

그러면 30%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전체 저축에서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일영 위원 이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저축도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액수로 봐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소득 파악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집단하고 예금에 가입된 분들하고 노인 비중이 똑같다고 하면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입자 547만 명 중에 노인이 519만 명 가입했는데 그중의 30%가 앞으로는 가입이 안 될 것이다.

○정일영 위원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세수가 얼마큼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게 저희가 추산하건대 연 1500억에서 1600억쯤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연 1500억이라고 그랬지요. 어쨌든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과세특례 대상자를 줄인 것은 이번에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너무 줄어드는 폭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 65세 이상 인구가 노인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 75세 이상이나 이렇게 확 높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도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속 소득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지금 65세 노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많이 진행 중인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연령을 조금 더 올리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 자꾸 줄여 나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7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간곡히 요청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세지출 상위 순위로 해서 이게 일곱 번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석 위원님 안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까지 조세지출과 관련해서, 물론 안 하면 증세를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증세에 대해서 계속 안 하면서 이것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는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 대부분의 절세 혜택으로써 많이 활용되던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금의 성격과 절세 혜택의 성격을 같이 묶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한번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올해 얼마지요, 차관님?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해서 약 228만 원 수준이 될 겁니다. 그보다 조금 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절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단돈 일어난 원 차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게 연금의 경우에는 그 탈락으로 인한 박탈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절세 혜택까지도 못 받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도 정부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를 보니까 한 280만 명이 넘어 가는데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부가 한번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김영환 위원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게 저축계좌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배당소득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배당소득이 나오는 저축계좌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것은 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김영환 위원 아니, 지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증권회사에 가입을 하면 주식도 살 수는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순자산 지니계수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과연 자산 증식의 효과로 보자면 저축계좌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그쪽으로 쏠아서 자산 형성을 더 적극적으로 주는 게 좋은지……

그러면 이러한 계층의 분들이 다른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일 대표적인 게 ISA 상품이 있는데요. 연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이고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으로만 보면 이것보다도 혜택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투자상품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개인의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갈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은행 중심의 과거 전통에 있다 보니까 주로 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돼 있는데 저는 좀 다른 투자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생산성이 있는 투자 요인들로, 같은 조세지출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집중해서 혹은 단계적으로 늘려 주면서 자산 형성을 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세제 혜택을 더 주면서 그냥 저축계좌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요인들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세지출을 더 강화시켜 줄지, 아니면 다른 투자로 유인되는, 자산 형성에 도움되는 것들의 조세지출을 좀 도와줘야지, 같은 조세지출이라도 자산 형성에 훨씬 도움되는 측면으로 저소득 계층이 올라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구상은 있습니까, 장기적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SA를 예로 들자면 그 안에서도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자체를 더 줘 가지고……

○김영환 위원 5년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기간 말고 비과세 한도 자체를 더 높여서 서민형 ISA라고 별도로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에 대한, 주식의 장기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돈을 저축에만 묶여 있게 하는 구조여서……

○소위원장 박수영 아주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정태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고령자의 경우는 평균 저축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계좌의 평균 가입액이 한 3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이.

○정태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서 3800만 원을 저금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적이 뭔지, 목적이 생계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건데 65세가 넘어서 4000만 원 가까이를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있고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어른…… 그 목적이 뭔지, 목적하고 실제 현실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잖아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래서 줄인 건데. 그래서 줄인 건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될까? 그 목적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소득 하위 70%인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70%……

○정태호 위원 아니, 70% 이하잖아요. 70% 이하인데, 이미 자산이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머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등 이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자산 형성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 준다 아니면 세금을 안 받는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65세가 넘어 가지고 4000만 원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안 받는다, 좀 잘 이해가 안 돼.

○정일영 위원 저 자료 하나만……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 요구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 실장님, 자료 하나만……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자료는 계산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65세 가입자 중의 70%가 기초연금 수급자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 30%를 가입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세지출이 90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30%가 빠졌을 때 세수증대가 1500억, 1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70%보다 사실은 30%가 고소득자로 보이고 그 고소득자들의 예금, 저금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수치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1500억, 1600억이 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그 자료를 한번 쥬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자료를 좀 더……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위원님들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기형 위원님이 9000억 이상의 조세지출이 되는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연령을 올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셨는데 기재부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고민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논의로 분류하고.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94페이지,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5년도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5%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9%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93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 의원안의 경우는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단순 연장하는 안이고 2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님의 예탁금 한도를 일정 조합원에 한해서는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는 농·어·임업인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가입자, 그러니까 총급여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현행 지금 일정대로 2026년부터는 5%의 세율로, 2027년 이후부터는 9%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은 97페이지 부분인데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능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상호금융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동 과세특례의 취지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악화된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경영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은 이 제도가 농어민·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기한을 기본적으로는 3년을 연장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제도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어민·서민층만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고소득이거나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대로, 현행 규정대로 내년부터는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장기간, 76년부터 도입되면서 고소득층이 준조합원의 자격

을 통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늘어나서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4000억 수준이었다가 2024년에는 1조 680억까지 조세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농·수협이나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 준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좀 줄였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자금이 이탈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비과세 적용을 줄이는 부분을 기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신규 가입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유지를 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하되 그분들도 사실은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금리를 은행권하고 비교해 보면 농협·수협에 있는 세전 이자율을 세후로 환산하면, 은행은 어차피 15.4% 과세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9% 저율과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0.35%, 35bp를 높게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금 이탈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농협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금 흐름이 새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 대비해서 농협의 경우 17.9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협도 1.1조가 늘었고요. 전체 상호금융이 29조가 늘었습니다. 농협에서 분석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탈 예상 자금이 최대 0.4%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2조입니다. 2조가 빠진다고 예상하지만 이미 29조가 유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의미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상호금융기관이 보는 그런 예탁금이 다 비과세예탁금 이 제도를 통해서 받고 있느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예탁금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예탁금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농협 같은 19년에는 비과세예탁금이 17%였지만 현재는 14%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가 유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비과세예탁금으로 인한 자금 수신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크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건전성 이야기도 농해수위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상호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를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해서 과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PF 등으로 해서 이것으로 인한 손실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께서 이례적으로 길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것은 여섯 번째로 많은 건입니다. 10개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조세지출이고 그래서 또 함께 더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 실제로 농어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농어민

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월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정무위에서 보면서 각종 PF 부채·연체율 같은 것을 체크를 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PF 관리 잘못된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이런 세금 이슈로 치환해서 이것을 바꾸면 안 되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오히려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어제인가요, 구윤철 장관께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농협 등 이 상호금융기관의 자금들이 ISA 계좌로 빠져나간단든지 상당히 그런 우려도 지금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 구체적인……

○윤영석 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잠깐 첨언할 수 있으면,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혜택을 줄 때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금 이탈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종합소득 규모별 예탁금 이자 등 세금 감면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사항으로 할 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나 이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감면액이. 그래서 방금 설명할 때 마치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자료다,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없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높아도, 5000만 원 이상하고 5000만 원 미만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3000만 원 한도 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감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아요, 그것 지적을 제가 합니다. 3000만 원 캡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한 73%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수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준회원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농어업인,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인

데 이럴 경우에 시중은행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이 주가 되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형평성 측면에서.

또 하나, 제가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총급여 5000만 원 이상 준조합원 비중이 약 13.7% 정도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약 7%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결국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요즘에는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면 상호금융권 자금이 결국은 대기업이 운용 중인 핀테크의 금융사 또는 1금융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이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저도 상호금융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우려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달을 할게요.

아까 차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적용이 된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통상 준조합원의 자격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갱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고 3년 내에 이분들도 다 비과세에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그때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할 거다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취지가 맞아요, 취지는 맞지만 또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상호금융이라는 부분이 지방의 취약한 분야에, 특히 농어업 분야를 전담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 자금 용자를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저것도 있잖아요? 금융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호금융 있잖아요, 약간 오프라인이 있는 이런 금융이 또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특히 농어촌의 금융 인프라가 이를 통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어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전속으로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접근성이 줄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에서 배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가 있다.

그리고 현재 상호금융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PF로 좀 물리고 있고 그러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이러한 계기가 되면 심리가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 이탈이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고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을 해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우려와 그런 리스크를 조금 완충하는 형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까 차관님, 이번에 이렇게 혜택을 줄이더라도 자금 이탈의 우려는 별로 없다라고 하셨지요? 그때 사례로 든 게 농협이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 신탁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규모가 되게 영세해서 만약에 이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거기에 자금 이탈이 문제없을 거라고 보기에선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회를 주시면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은석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작년 말 대비해서 신탁도 7.8조 원, 새마을금고도 1.4조 원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보료가, 9월부터 1억으로 예금자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혹시 탈이 나도 1억까지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후 저율과세가 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여전히 35bp가 높기 때문에, 1억까지 보호가 되고 금리가 35bp 높는데 조합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나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규모가 영세한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오기형 위원님이 옆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오기형 위원 잠깐 빠지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근본 취지는 좋고요. 농해수는……

새마을금고·신탁은 거기서 원하는 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그건 행안부……

○정일영 위원 행안부지. 새마을금고는 좀 걱정은 되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손익에 1조 7000억 손실이 난 건가 보지요, 새마을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실 PF에 결국 들어가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연체율도 한 6% 안팎 엄청 높고. 만약 이게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예금은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새마을금고가 구조·경영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협·수협이에요, 특히 농협. 농·수협은 사실은 농어민·서민…… 고향에, 지방에 가 보면 금융권 은행들이 없잖아요? 그냥 농협들이 다 있고 거기서 농어민들·서민들의 재산 형성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등등 그런 서비스 또 농협·수협들이 보면 지역에서 금융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농어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농협·수협·산림조합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일단은 조합원하고 저소득자는 그냥 유지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농어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대로. 그런데 준조합원하고 고소득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농어민은 전부 다 되고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 준조합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이외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농협의 전체 가입자 중에 준조합원 비중이 82.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많은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농협도 좀 타격을 받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더 높습니다, 세후 바꾸더라도.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정일영 위원 과세특례가 없더라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14% 과세하지 않고 5% 과세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자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차가 큼니다, 일반은행보다.

○정일영 위원 그 퍼센티지 차이만큼 계속 이득이 있으니까 준조합원 같은 경우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리고 9월 전에는 5000만 원까지 예보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 1억까지 늘렸잖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그건 아까 들었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당연히 거기에 돈을 더 넣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준조합원이 82%, 저소득자 밖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네요? 90%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준조합원의 전체가 아니고요. 5000만 원 이상, 하여튼 준조합원 중에는 고소득자를 빼겠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준조합원 중에서도 고소득자? 그러니까 준조합원 중에 저소득자는 해당이 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한 82%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82%는 전체 준조합원이고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세금을 과세특례를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저희가 그 소득 통계는 없어 가지고 준조합원 중에 몇 명이 5000만 원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조금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신규 가입자, 신규 가입 때 적용한다는……

○정일영 위원 어쨌든 기존 가입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일영 위원 신규 가입자들 중에……

그런데 이걸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우하고 농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하는 경우, 지역에서 하는 경우. 지역농협 얘기지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상호금융이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지역농협들이 도시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준조합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농협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의 근본적인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해수에서도 이렇게 결의문도 채택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차관님, 상호금융기관을 사회적금융으로 보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조합원의 어떤……

○정태호 위원 아니, 그 취지, 금융기관의 성격 자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호금융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사회적금융이잖아요. 국정과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금융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상호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서가 행안부로 가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일종의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게, 일종의 후퇴시키는 게 그런 정책방향에 맞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 방향에서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사회적금융이 운영되는 방식은 비조합원으로부터 예금 유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상황이 여기에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PF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 PF 때문에 이사장이 그냥 교체되는 상황까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 기관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정책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 상황에 정치적 분위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책 방향에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타이밍 상황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호금융기관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지원을 줄이는 것은 지금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운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 설명한 것 중에 조금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만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90%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들은 인정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설명 중에 기존 가입자는 저소득자가 아닌 분들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큰 자금 이탈이 없을 것이라라는 취지로 설명이 됐는데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호금융기관들에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됐습니다.

충분히 의의제기되고 상당 시간 여기에 투입을 했는데 이것은 소소위에서 재논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108페이지입니다.

ISA 편입 가능 상품을 명확히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가능 금융상품에 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는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문상으로는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가능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보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ISA에 가입하면 해외주식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국내 상장된 ETF에서 하는 건 포함되는데요.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까지 포함할 거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투자자가 늘어나는 사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건 정부안대로 잠정합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걸 법안을 내신 유상범 위원님하고 이소영 위원님이 현재 안 계십니다. 이소영 위원님이 예결위 간사이시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님 참석하시는 날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을 제안하신 위원이 두 분이 안 계시잖아요, 양쪽에.

다음은 몇 번인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156페이지의 8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조세특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체가 조세특례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특례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라든지 다른, 자사주 인출 관련된 다양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현행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려는 그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행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권 끝났으니까, 지금이 3시 35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몇 권?

○전문위원 정지은 지금 6권입니다.

조특 법인세 분야 1권이고요, 7번까지 해서 총 55개 항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작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6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권이고 1페이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페이지에 있고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계형 창업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지금 현재 연 8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24년 2월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 1억 4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규모가 좀 큰 편이고요. 2024년도도 한 80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 중에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 부분으로 인한 조세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 됩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3페이지에 보시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이 있고요.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으로 해서 별도로 제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도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바뀐 경우에도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한 50%가량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면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세제실장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라는 게 그냥 창업중소기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걸 매출액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그걸 생계형 창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법안을 낸 것이 8000만 원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고 이렇게 내게 된 배경에는 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 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이과세 기준이 작년에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법이 딱 연동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올랐으니까 같은 취지로 이번에 이것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도 올리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지금 현재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해서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2건의 안이 들어와 있어서, 일몰 연장안과 함께 지금 9페이지·1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 외에 지금 현재도 제외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외에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행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지금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체 중소기업으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조세지출 감면 규모가 매년 약 2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요.

그리고 17페이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안이고, 18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3년 연장안부터 5년 연장안까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페이지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수평적 형평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심층평가 결과 부분과 그리고 30년 넘게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항구화된 제도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특례 제도의 정책 실효성이 좀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함께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감안하지 않고 최대 30%까지 감액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나목에 있는 것처럼 연장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에 설명된 것처럼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 규모에서, 여기서 나오는 조세지출이 2조 4000억이 있는 상황에서 업종이 만약에 추가로 없어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종과 무관하게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다 세액이 감면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조세지출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 제도가 참 쉽지 않은 제도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조세지출 건 중에서 심층보고서가 나왔던 사안이고 세 번째로 큰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실제 심층보고서 내용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바로 단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에서 일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고려하면 그러면 이걸 더 확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속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큰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런 심층보고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대로 가기보다는 기재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그쪽 부

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법인세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법인세율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다 재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반적 제도로 가는 건 안 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저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일몰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토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법안을 냈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고용 효과도 크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산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에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특별세액감면 이것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요. 일단 3년, 정부안하고 똑같은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해 가지고, 이 업종 제한을 폐지해 가지고 너무 넓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고용의 양과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획재정부 자료입니까? 이거 어디 자료예요? 기재부에서……

○소위원장 박수영 예, 기재부 자료. 각주에 있는 기재부 자료.

○정일영 위원 기재부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에 조세감면 지출규모가 300억 이상인 거는 심층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중의, 용역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한 거예요, 언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연구원에 시킨 겁니다.

○정일영 위원 글썄, 그 내용이 언제 어떻게…… 아니, 이 내용대로 하면 이 제도 필요 없잖아요. 개정안을 이렇게 연장한다고 해 놓고, 이 자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정부에서 이렇게 심층평가 용역을 갖고 있으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오도록 정책을 내놓거나 제도개선을 하거나, 조세 감면을 이렇게 해 줄 정도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 효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면, 용역을 해서 심층평가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정말 이것 문제가 있으면 이 제도를 없애야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결과가 좀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중소기업 도와줘야 되는데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다면 그 용역의 연구가 잘못됐든지 이 제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정책을 다시 만들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나왔길래 이렇게 써 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는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제도의 효과성만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창업을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행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듯이 중소기업들이 원래 조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게 제일 큰 제도인데 이 부분을 바로 일몰시키는 것은 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담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실장님, 여기도 보면 실증분석 결과 고용의 양과 질, 재무성과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도…… 전문위원이 썼지만 그 심층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은 계속 약간 좀 너무 개론적인, 얼버무리는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자료를 좀 다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큰 돈인데, 예산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조세 감면은 거꾸로……

저는 일단은 찬성이고, 자료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 보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실장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볼 때 이 중기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 결과 일몰 연장 필요성은 없다고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결론을 내리신 건지, 뭔가 뉘앙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는 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기재부의 입장인 건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낸 것은 연장안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층평가 결과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다 지적을 했지만 저희는 후자의, 중소기업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낸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법인세율 인하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는 부분하고 사실 이것도 같이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 올려서 나오는 세수가 1.4조였고 여기서 나가는 세수가 2.4조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고 이거를 감면한다면 어찌 보면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나름의 정책 효과를 담기 위해서 세액감면에 있어서 지역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또는 소기업하고 중기업을 또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정부가 기대하는 바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업종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연장안을 냈

습니다.

○**박성훈 위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몰 연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셨는데 다른 정책적 고려, 정치적 이유를 감안해서 연장을 가져왔다는 게 기재부의 솔직한 속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없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은 하되 기재부에서 좀 연구를, 심층연구를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음에 올 때도 또 아무런 연구도 없이 또 그냥 연장만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관료적인 리스폰스(response)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검토해……

중소기업이 유지가 되면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중소기업인들이 파산해서 나가 버리면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기형 위원님 그리고 박성훈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연장은 하되 다음에 오실 때는 연구를 제대로 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좀 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오기형 위원**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이 심층평가 보고서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안 자체를 용역을 하든지 해서 별도 보고서를 한번 내야 되고 기재위에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기재부에다가, 이게 상충하는 가치 두 가지이거든요. 돈은 낭비가 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차관님 영명하시니까 잘 연구를 해서 기재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는……

○**정일영 위원** 실장님, 이 심층평가 관련되는 책을 송두리째 저한테 쥐 보세요, 한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 자료는 다 국회에 드리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또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이 연구보고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미 다 가 있는데요.

○**정일영 위원** 송두리째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어차피 연구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구용역의 방향이랄까 제 개

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정책을 하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산업적 재편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다르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지만 또 하나의 축은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GDP의 한 5% 이상은 사회연대경제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 측면에도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데 거의 자영업 수준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이런 데들의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줄지 여기에 대한, 그때 최상목 부총리 때도 그랬고 구윤철 부총리 때도 그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금의 인센티브가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 생산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구조조정을, 새로운 산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가 그걸 막는 측면이 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좀 고민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면 거기에 포함돼서 한번 주제들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랫동안 지속되는 큰 고민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조 원이 넘는 조세지출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적 요건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뭔가 새로운 혁신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이걸 주겠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걸 계속한다는 게 납득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 정도 투자할 거면 뭔가 의미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많은 분들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거 어차피 지금 당장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의료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의료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병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특과장입니다.

필수의료만 지금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급여상 보험수가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병원에 세금을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깎아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왜 이걸 그렇게 깎아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위원님,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매출액 제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천하람 위원 어쨌든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박수영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필요한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낼 때 그걸 깎아 주는 제도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이런 문제는 아닌 거니까…… 아무튼 저로서는 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

다.

○소위원장 박수영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적인 사항인데 개선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만 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재임 중에 빨리 좀 고민을 해서 기재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건 중에는 대상업종 제한 폐지는 받지 아니하고 적용기간 연장은 정부안대로 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22페이지입니다.

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3년 연장안과 5년 연장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상생결제 제도는 2·3차 협력사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담보된 1차 협력사의 외상매출채권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1차 협력사에 준하는…… 어음 등 이런 지급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체 지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제율을 0.5%에서 0.15%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고요. 거래 단계별로 대금결제일 격차에 따른 유동성 저하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감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28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 안도 2개의 주제이고, 31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34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몰 연장안과 관련해서 3년 연장안부터 10년 연장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선 의원님 안, 추경호 의원님 안, 정부안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이외에도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 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 그리고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의 취지를 감안해서 3년 연장안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원님 안은 받지 아니하고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 지원 신설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법인세법 개정안 심사할 때 기이 논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 반영해서 잠정 합의하시기로 하셨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인세법 때 논의한 대로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64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건입니다.

개정안은 일몰 도래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서 10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8페이지 부분이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취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이로 인한 혁신 고용 창출 등 기대효과와 함께 소수 유망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집중 우려는 없는지 등도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은 벤처투자 지원 취지를 위해서 벤처투자 지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안에 있는 업 여기에 7년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세제 지원 대상은, 만약에 업력 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아무래도 7년이 지나간 기업, 10년까지면 7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후기 기업에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원님 말씀처럼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부랑 좀 더 논의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선 법안을 제안하신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차관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끝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그게 중소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바람직하건대 유니콘기업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많은 지원이 초창기에 딱 머물러 버리거든요. 데스밸리를 넘어서 거기서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이. 그래서 좀 더 효과를, 우리가 성과를 보려고 한다면 지원을 후단까지 이렇게 좀 넓혀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기업의 코스닥 상장 소요 기간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에 보니까 8.5년이었는데 23년도에 15.1년이 됐다. 15년이 된다, 이렇게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8년 이후 유니콘으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기업 19개사를 봤더니 유니콘기업에 도달하는 소요 기간이 약 10년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유망 신산업, 기술창업기업 경우 업력 10년까지 창업기업으로 간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하튼 유니콘기업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후기 벤처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세수감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가 가장 크리티컬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해 가지고 기업이 기반을 확실히 잡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세수, 세원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바탕을 해 가지고 조금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세제실장님, 7년을 10년으로 확대를 하면 세감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은…… 정관이 아니며 가지고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숫자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정처는 안도걸 의원님 안이 366억이라고 그랬거든요, 3년간?

○**소위원장 박수영** 3년간 366억, 1년에 120억 정도가 감이라는 얘기지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예정처는 안도걸 의원님 안이 366억이고, 세감이다. 그다음에 정부안이 또 3년간 369억이에요, 세감이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이가 없네?

○**김영환 위원** 그래서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는데 세감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김영환 위원** 아, 그런 취지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은 7년을 유지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현재 조세지출이 한 100억이 되는데 7년에서 10년 늘리면 100억이 더 늘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 그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은 아예 10년으로 늘린 게 아니거든요. 10년을 늘린 게 아니라 7년을 연장하면 연간 100억이다, 그리고 3년 늘리면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취

지로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은 안도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세감도 계산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추후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은 벤처캐피탈사가 벤처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이고 이것은 국내 기업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해서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위원장 박수영**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

○**전문위원 정지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입니다.

이 건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벤처캐피탈사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이고 이것은 내국법인이 직접 벤처캐피탈사에 출자를 하거나 출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간접출자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안이고.

천하람 의원님 안은 직간접투자 시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율 인상이나 일몰기한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 출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안이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직간접투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기본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좀 차이를 두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안을 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7년 이내의 업력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 중심의 출자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과 함께 벤처투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심층분석 결과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이 부분을 통한 투자 성과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말씀, 정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벤처투자를 할 때 중간에 펀드 오브 펀드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나눠 줄 때 그러면 하나가 더…… 지난번에 SPC는 벤처랑 캐피탈 사이에서 하나 생긴 건데 이것은 캐피탈 위에 하나가 더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도 똑같이 5%를 주는 조건 하나하고.

이 부분은 사실 벤처투자를 좀 더 대형화해서 제대로 된 큰 펀드가 생겨서 지원했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중기부랑 대화할 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뭘 했냐 하면 출자금액이 5% 외 증가를 하면 그것에 대해 3%를 더 주기로 처음에 준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부분에서 좀 더 유인책을 줘야지 이게 더 활성화 되지 않겠냐 해서 출자금 처음에 할 때 5%, 증가분의 3%를 5%로 늘리는 게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벤처투자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을 더 키우자라는 취지가 정부안의 취지고요.

이것 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업력은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 생각되고요. 공제율 자체를, 기본공제율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세수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정처에서 준비한 내용들이지만 공제율을 올릴 때마다 한 3000억, 5000억 이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내국법인, 일반 기업이 벤처투자를 하는 걸 장려하는 게 이 취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제율이라는 게 내국법인 입장에서 선택을 해 보면 자기 회사에 자기를 위한 설비투자를 할 거냐, 벤처투자를 할 거냐인데 일반 대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투자를 할 때는 1% 공제를 해 줍니다, 신성장이나 국가기술산업이 아니라면. 그런데 벤처에 가면 5%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본업에 충실한 투자하고 벤처투자 이 간격에서 지나치게 높지 않나, 그리고 세수감도 크고 본업과의 문제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본 5%로 올리는 건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에 대해서 좀 올리자는 천하람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안도 저희는 봤는데요. 저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도 면밀한 신중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천하람 의원님이나 안도걸 의원님 중에 말씀하실 분.

○천하람 위원 이게 어쨌든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산적인 자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행태적인 요소나 우리 사회의 밸류에드가 많지 않은 것과는 좀 차등이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아까 1%, 5%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조세감면을 해 주는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5%를 2016년에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고 올린 적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벤처투자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 이쪽으로 머니 무브를, 생산적 자본으로 머니 무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걸 드라이브를 걸려면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지 기존과 같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좀 소극적인 자세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차관님, 대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반도체라든가 첨단산업 분야에 지금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5%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15%.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가전략기술이 또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국가전략 이쪽은 플러스 5%가 되고 과거보다 좀 증액이 되면 또 플러스 알파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우 보면 시설투자세액공제가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해 본 거지요. 그러면 벤처 쪽에 결국은 이 자금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R&D라는 건 설비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만들어 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5%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 한 20% 최소 수준으로 잡더라도 그 절반 정도 벤처 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비중이 굉장히 편중돼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재 75 대 25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특히 지방에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머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왕성하게 또 벤처기업들이 일어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확고한 정책 시그널이 가 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플러스 5% 정도는 비수도권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두 의원님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추가로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차관님이 답변을 하시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 주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취지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금 현재 중기부랑 같이 벤처 대책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아마 저희 연내에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가 평소에 해서 세법 올라올 때는 갖고 와야지 세법 올려 놓고 이제 연구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그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보류했다

가 다음에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필요한 법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논의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재논의로 분류를 해 놓고 기재부와 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이고 이건 2건과 관련된 일몰 연장 건입니다.

첫 번째는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공동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안이고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등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를 하는 안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년 연장안과 3년 연장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똑같은 연장안이니까 정부 측 의견은 뭔가요? 정부안대로 3년, 3년입니까, 2개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소부장은 저희가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소부장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의 출자·인수 세액공제는 21년 도입 이후 현재 5년간 아예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일몰을 종료하고요. 다만 외국법인의 인수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개 중에 아래쪽 것만 연장하자 이거네요, 외국법인 인수 시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내국법인들의 경우에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혹시 사례가 없어도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산업적,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급히 소재·부품 관련된 업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을 많이, 막아 버리는 결과인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까지 5년간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은 가능성을,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세 실적, 감면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의 실적이 없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차관님, 이게 전에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하는 걸 대상으로 했었네요. 그때 이렇게 꼭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을, 공동투자 하면 과세특례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정책적 목표가 있었나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사례가 별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쟁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회사들끼리 특정한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라?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 소부장 때 이게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업체가 있고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인 기업하고 수요업체인 기업이 공동으로 가서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공동의 경우에만 만든 걸로 저는 알겠, 제가 예전의 기억은 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만들 때 산업부가 저희한테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반도체 기업인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동으로 출자해서 현재 제품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유상증자 하자,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었는데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없어서……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기업의 투자 관행이나 또 의사결정을 보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그런데 실제로 내국법인,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출자·인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글로벌 SCM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둘 이상의 내국기업이 공동투자 하라 하니까 없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투자가 아니고 그냥 단독투자와 관련된 길을 한번 열어 줘 보고 혹시 산업계에서 그런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그때 기억에는 메뉴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혼자서 하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개를 보고 골라 와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했는데 혼자 하는 것까지는 굳이 세제지원이 필요할까, 공동으로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대기업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는 세제지원을 하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할 테니까 그사이에 산업부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국법인은 하나만 인수해도 그냥 세제혜택을 주는데 국내법인을 인수하는 데는 공동으로 하라고 하니까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앞부분의 7번 논의할 때 거기에 일몰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일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타이밍을, 이번에 못 올라가면 종료가 돼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제도 자체는 일몰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하실 때 다……

○**소위원장 박수영** 추가로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것 7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추가 보고는 저희가 연내에 만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중기부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제도의 일몰 자체는 연장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연내에 제도개선을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일몰 연장은 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되는 건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 앞부분은 제도와 관련된 설명 부분이고요.

108페이지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을 대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환 위원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정지은 109페이지입니다.

○김영환 위원 109페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신영대 의원님 안은 국가전략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최대 10년에 걸쳐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3자 양도를 허용하거나 직접환급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상당 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1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그리고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세부담 형평성이나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제도의 취지는 감안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제도는 우리나라 세제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데 그것을 발의하신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다음에 이월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 이게 크레딧을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의 보조금, 조세지출을 일으켜 달라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국세청에 신청하면 환급해 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 변동율, 당해 변동치를 엄청나게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잘 안 걷히는 상황인데 세수 환급이 늘어나면 저희가 그것을 더, 이게 환급이 필요한 거는 널 세금이 작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건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진 세수 상황에서 환급을 더 해 주게 되니까 세정 당국, 세무 당국에서는 세수결손이 더 확대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반대 방향이 더 나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큰……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세수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양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도가 갖고 있는 제

도인데요. 이것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왔을 때 오히려 일일이 어떻게 다 추적할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타인에게, 제3자에게 양도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돈 받고 팔고 그 기업은 국세청에 신청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소위원장 박수영 상당히 파격적이긴 한데요. 기업 해 보신 최 위원님.

○최은석 위원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 전혀 지금까지 없었지요. 이것 처음 제안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최은석 위원 글썄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뭐 도움은……

○소위원장 박수영 기업 할 만하겠네.

○최은석 위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도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조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만약에 신설되면 제3자 양도 제도 같은 것들이 앞으로 붓물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아니고 이것 공제세액 거래제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이 6명이나 발의를 이렇게 했을까요?

○최은석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대표로 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아, 발의하셨어요?

○정일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아, 발의하셨구나. 몰랐어, 발의하신지 몰랐어.

○정일영 위원 아니, 어쨌든 너무 획기적인 법안을 냈나 싶기는 한데……

○최은석 위원 그런데 여러 분이 어떻게 내셨대, 이것 되게 어려운 법안 같은데.

○정일영 위원 아니, 이게 국가전략기술이 되니까, 국가전략기술이니까……

○최은석 위원 3자 양도 제도 다……

○정일영 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갈수록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첨단산업 전략기술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미래 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할 텐데. 대규모 설비 투자 R&D 핵심 기술 이것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결국 국가 간 경쟁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서 필요하지 않겠어요? 차관님,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국가전략기술의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국가 세율을 아까 반도체의 경우는 15%까지 많이 올려 드리기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3자 양도 제도까지는 빼고 투자세액공제 환급까지는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너무 어려운 요청사항이어서……

○정일영 위원 그런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검토한 게 세수 변동이 엄청나게,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리는 효과를 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농민,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환급해 달라고 요청이 될 텐데 재정 당국에서 이것을 버텨낼지 좀 고민이……

○소위원장 박수영 1년 단위로 쌓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한세에 미달돼 가지고 안 냈잖아요, 공제를 못 받았잖아.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보통 그걸 내년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해에 바로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해에 바로 달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아니,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그 당해연도 것은 아니잖아요. 당해연도로 돼 있지만 나중에 이월되거나 이연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일단 환급이라는 것 자체는 내년도 넘기면, 현행 이월공제 제도가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 결국 환급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해에 다 달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이게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차전지에 투자를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캐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팔리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은 막 따라오고 있고, 이미 중국은 추월했고.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국가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고사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떨어지게 생긴 거지요. 그런데 세계상으로는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세계 혜택에 대한 만큼만이라도 현금으로 환급을 해 달라 이 요구가, 아니면 그것을 못 해 주면 다른 데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차전지 부분이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이 역시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있는 제도라도 뭔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하는 게 지금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세 재정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도 저도 보여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예측이 어려운데 당장 그 업계는 더더구나 우리의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키워야 되는 이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 제도를, 뭔가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 또는 어떤 정책을 할 거냐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이 제도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가 아니라 재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초혁신 프로젝트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가 R&D 지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때 신성장 사업으로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도 제도가 좀 낫설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세 과정에서 이게 손익 통산의 구조가 있고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손익 통산 또는 과거부터 5년간의 이월 손익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비즈니스 형태를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하는 차원에서 다 포용하고 그 주체가 일종의 잔액에 대해서만 세액 부과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갖는데 지금 현재 이 손익 중에서 이익에 기초한 추가적인 어떤 세금 내고 환급되는 구조가 생긴 건데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느냐 문제인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 게 회사와, 그러니까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일정 채권이 확정되면 그거는 나중에 환급받는 게 맞고 그것 전년, 작년도 가능한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그 콘셉트에서 이해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돼서 가능한 건지에 따라서 이 제도 작동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여러 가지 손익 공제, 이 공제 제도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법인에서 하나의 납세자가 손익 통산하고 이월을 또 함께 하고 5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중의 일부를 떼어 내는 방식이라면 제도 도입 자체를 멈춰야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이미 확정된 것 자체를 서로 이동 가능한 그런 채권이라면 그냥 도입해도 사실상 자기의 권리 갖고 자기가 양도하는 건데 굳이 이것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성격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정일영 위원 마무리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마무리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이게 좀 낫선 제도라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바이오 기업도 있고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R&D 쪽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데들이 보면 초기 투자들은 작은 벤처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크게 투자가 되는 데 몇 년간은 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핵심 기술 투자 주로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익이 나와야 과세가 되는데 이익은 안 나오고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 이런 혜택을 좀 받으면 되지 않나. 그래야 좀 핵심 산업들이 발전하고 또 미국의 IRA나 다른 나라 일부에 보면 또 유사한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가 좀 도입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제도인 듯하나 저희가 한 30분 논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기재부가 계속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합의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크게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해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건이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적용 기한 연장 건이 함께 있어서 하나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공제 대상 확대 건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134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고요.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웹툰, 게임, 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별도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 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민형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간행물·전자출판 그리고 출판만화 그리고 디지털만화·웹툰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 안, 정연욱 의원님 안은 게임물 추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조승래 의원님 등 안은 음악과 관련된 음악, 공연 그리고 게임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별개로 별도의 조를 신설을 해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별로 세액공제율 기본세율이 좀 상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도 있지만 대부분 상향하는 안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투자 증가,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관광, 수출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를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게 최근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상 선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로 게임이나 만화, 웹툰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이 관련 R&D 비용으로 지금 세액공제 혜택이 되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정부안은 웹툰의 제작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지

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제작비용 지원하는 것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웹툰도 같이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웹툰을 만들 때 드는 기획·편집·디자인 그리고 작가비 이런 것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저희가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 안에 보면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영역을 좀 더 넓히자라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음악·공연·출판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의 경우는 현재 R&D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게임을 살펴보니 사실상 게임의 R&D 비용 공제가 게임의 제작비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시나리오 제작비 그리고 게임 개발 프로듀서 인건비, 게임 프로그램 구조 설계비, 게임 엔진 개발비가 이미 R&D로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도 찾아봤더니 현재 각 매출 중에서 세액공제하는 비중이 영상의 경우에는 0.01%만 현재 R&D로 공제받고 있는 데 비해 게임 제작은 0.57, 60배나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R&D로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저희가 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용보다는 현재 R&D로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가수,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조특법을 개정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저희 정부안대로 웹툰에 대해서 제작비용을 허용해 주는 걸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CJ에 제시던 최은석 위원님이……

○최은석 위원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산업별로 정리해서 자료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한꺼번에 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까 예를 들면…… 자료 좀 주시면 그게 해당 산업별로 균형 있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웹툰이 특별히 지원이 많이 낮아서 이번에 웹툰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은 K-컬처라 하고 K-콘텐츠라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거론되는 게 전부 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균형감 있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쪽 나뉘져 있으면,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 자료 가능하시지요?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을, 자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각종 콘텐츠별로 재정 지원이 있고 예를 들면 게임·음악 다 있고 또 세제 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업종별로 달라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신고를 할 때 내가 게임 업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가지고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파악해 보는 대로 하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재정 지원이라든지 다른 세제 지원 내용이 있는지는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 받아 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정부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제 대상은, 웹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안 25조의8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거기 보면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무슨 의미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그 웹툰이라는 것이……

○정일영 위원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인데요.

대상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사업자로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기서 내국인이예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내국인, 좀 생소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여기에서 대통령령이라 하면 지금 우리 이 법의 대통령령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저쪽 법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저희 법입니다.

○정일영 위원 우리 법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웹툰의 범위 내에서 또 뭘 정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웹툰이 무엇인지 사실은 세법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웹툰이 되거나 또는 디지털만화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종이만화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어디다 올린다면 거기까지는 포함해서 웹툰으로 볼 것이고요.

아까 내국인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웹툰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을 제약한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작비용이라는 것이 영상콘텐츠도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는 것도 제작비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것도 배우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넘어서면 안 된단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웹툰도 같은 구조로 정확한 제작비의 항목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게임 콘텐츠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문화 콘텐츠는 범위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이해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콘텐츠에 관련된 그 법이 문화부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한번 찾아.....

○김영환 위원 그 법에, 모법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콘텐츠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따 가지고 온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재정 지원도 있고 조세특례도 있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재부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문화산업 강국으로서 더더욱 발돋움하려면 우리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전체적인 균형과 성장에 관련된 지원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세제실장님도 지금 뭐가 어떻게 더 지원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망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제안한 웹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세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재정 지원들이 뭐가 있었고 또 다르게 재정 지원하는 형태는 뭔지 이렇게 비교형량들을 좀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은 판단하기도 좋고, 아마 기재부 경제정책 하는 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를 발라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콘텐츠 전체 관련해서 한번 발라내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규모나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는 작업들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출판업계 있잖아요, 애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전달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도권의 출판업 중소기업들이 애로가 많아 가지고 25년에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출판업 같은 경우는 제작부터 수익 실현 때까지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부여되는,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감면의 실제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거기서 소득이 생겨야만, 순이익이 생겨야만 면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면제되는 것은 이월이 안 되잖아요, 공제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혜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은 고쳐졌지만 법이 실행되기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업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세액공제를 해 줘야만 정부가 당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애로사항

은 조금 한번 더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차관님,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제 생각에는 영화·드라마·음악·웹툰·게임 이런 것 해서 우리나라 K-콘텐츠의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이 장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K-콘텐츠가 타깃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규모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보시고 글로벌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걸 봐서 조금 더 역점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장르가 어딘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수익성이 되게 좋은 데는 비중을 좀 낮추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확대할 시장이 되게 많은 데 같은 데는 정책적으로 조세나 재정 같은 걸 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K-콘텐츠를 어떻게 좀 더 육성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정책 방향과 같이 맞물려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간사님 손 드셔서 정태호 간사님,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화 같은 경우가 올해 한 20편 정도 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보다도 거의 반도 안 되는 작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택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옛날에 하루아침에 홍콩 영화가 세계 주류에서 사라졌듯이 저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웹툰도 보면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세액공제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화콘텐츠 시장 30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대규모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OTT 때문이거든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 이게 처음에는 국내 기업에 제안이 됐던 건데 수지타산이 안 되니까 결국 넷플릭스가 가져가 가지고 제작을 해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 부분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오히려 이런 것은 대규모 기금 조성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또 기금이 있는데도 그 기금을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한번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최은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재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기재부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문화부라든지 모든 게 달라붙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안건은 다시 한번 자료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방금 전에는 대상 확대 관련되는 부분인데 세액공제율 인상 부분도 지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이 5%·10%·15%인데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10%·15%·30%로, 그리고 정연욱 의원님 안은 10%p씩 각각 상향을 하고 정부안과 조승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안은 대기업에 한해서 5%p씩 상향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나 연계 산업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다만 2023년도 세법 개정 당시에 2024년도부터 대기업이 원래는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최대 15%, 20% 그리고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2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감안 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가 특이하게 대기업의 공제율을 상향시켰네요. 어떤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콘텐츠, 영화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나목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아직 소개 안된 라목 보면 문화산업전문회사 해 가지고 영화를 지을 때 반드시 SPC를 통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걸 문전사라고 그러합니다. 이 문전사하고 내국기업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영화산업에 대해 요새 너무 상황이 어렵고 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다 그분들이 할 때는 지원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로 제안했는데 영화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대기를 굳이 5%로 할 필요가 있느냐, 대기업이 지원하더라도 10% 공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걸 보면 이게 기본공제고요. 또 영화가 국내제작을 많이 한다, 80% 정도 비용을 쓴다든지 인건비, 국내 스태프를 많이 쓴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되는 게 또 10%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 해서 20~30% 정도까지 지원돼야지만 영화산업이 그나마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낸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실제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의문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그동안에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마치 지금 약간 일부 조정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영화산업의 변화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내 수요자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제작 내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청 중에 기재부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와 있는데 이것 정도로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콘텐츠 심층평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제작 편수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라마의 경우 3~5년 차에 1~2편의 제작 편수 상승효과가 관측이 되고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도 2년간 평균 한 편 정도의 제작 편수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기업인데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결국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하고 봤을 때 과연 대기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많이 부족하지만 그중의 하나로 이 정도 하자는 게 정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영화산업이 요새 어려우니까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동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기업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곽규택 의원님 안, 정부안입니다.

같은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54페이지의 지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혜택 부여하고 있는데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같은 다른 문화산업 관련 전문회사와의 형평성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상·영화산업에 관련된 문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인데요. 현재는 문전사에 대해서 출자하는 사람이 중소·중견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업도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영화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취지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같은 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의원안으로 그리고 정부안으로 2년 연장부터 15년 연장까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는 또 3년 안이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77페이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에 관한 안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가속상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1년도 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한하여서 재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서 세부담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지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개정안은 2025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취득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박수영 위원장님 발의안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취득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속상각하자는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그 거랑 같이 통합해서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뒤에 스마트공장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아무 중소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공장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 주는 것으로 함께 통합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진성준 의원님 발의안이고요. 또 182페이지에 관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전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하는 부분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18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관련해서 세제지원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관련 가속상각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님도 같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188페이지,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가속상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스마트공장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고려하셔야 할 부분으로 190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가 중소기업 세부담 자체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이연 효과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가속상각할 거냐, 안전시설 가속상각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공장 가속상각할 거냐 세 가지로 물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체보다는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타깃된 정책이다 생각하고요.

안전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의 범위에 안전시설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을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이것은 정부안에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가속상각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차관님, 가속상각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지금 상각률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규정에 없는, 이 특례가 없으면 내구연한의 25%까지 자체적으로 가속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이면 25% 해서 7년 반 이렇게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특례가 있으면 50%까지 절반을 털 수 있는, 그러면 5년 안에 다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혹시 예전에 가속상각 제도가 있을 때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관련된 사례가, 투자를 촉진했다 하는 긍정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검증 결과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도입했다가 일몰시킨 제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만약에 가속상각 제도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적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여기 세 가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도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제로 이게 실증자료가 있어야지 하지 ‘지난번에 해 봤다. 그러니까 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도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제로 가속상각하면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곳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일찍 감가상각을 해 버리니까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마 지금 정확한 근거하고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소위원장 박수영**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김태정** 법인과장입니다.

조세연 연구결과에서 가속상각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가속상각이 지금 실제 얼마나 적용되고 있어요? 효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실제……

○**정일영 위원** 예, 실제 적용을 가속상각을 하는 경우들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은 없고요. 가속상각할……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연구한 거예요, 연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언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03년도에 유형고정자산에서 가속상각을 도입했었고요. 그래서 1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했었고 이걸 6개월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건 이상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2013년.

최근에는 22년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 그러면 22년도 거가 지금 없어졌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건 24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정일영 위원** 일몰로?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일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면 가속상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빨리 비용을 털어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투자해라……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산업 파트가 있으면 그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게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필요성들이.

○소위원장 박수영 필요성이 아니라 이게 법 만들면서 우리가 일몰처럼 한시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애초에 일몰을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정일영 위원 아니, 일몰들이 3년씩 계속 연장되고 하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연장 안 해서 이걸……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산업이나 기업, 제조업이든지 특정 업체의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계속 투자가 되고 또 가속감가상각이 필요하다면 그게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에너지절약시설……

○정일영 위원 2003년에 했다 13년에 했다 22년에 했다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있다가 다 없어지고 지금 안 하잖아요, 결국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걸 아주 예외적인 제도고……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생각할 때 대체로 설비투자가 부진할 때……

○소위원장 박수영 한 번씩 풀었다가 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도입했다가 그때 좀 자극제를 주고 또 경기가 돌아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스스로 알아서 느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나왔다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들 반월·시화공단에 가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스마트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감가상각을 빨리해 주면 이 기회에 도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감가상각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월·시화공단 같은 큰 공단에서는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정일영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아무튼 좀 특이하네.

○소위원장 박수영 저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봤는데 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세연 보고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합의 통과하시지요.

잠정 합의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박수영 의원님 안은 잠정 합의안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 건 아니고.

○정일영 위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은석 위원 3개 다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중간 것은 노동부하고 한다고 하니까.

○정일영 위원 스마트공장.

○소위원장 박수영 예, 스마트공장으로 하는 것, 정부안대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은 192페이지고 허성무 의원안인데 이것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와 그리고 스마트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출연금의 공제율을 높여서 스마트 구축에 대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금 손금 한도 내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 2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출연금은 기부금으로도 인정이 되고 손금 한도 내에서도 100% 손금 가능하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출연금을 했을 때 20%까지 공제해 주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10%입니다. 앞부분에 잠깐 논의했을 때 그때 깊이 스터디는 안 됐는데 대기업이 출연할 때 10%를 공제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 기부금으로 또 공제가 되고 또 법인세에서 상생협력 세제에 따른 지원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 보면 굉장히 크다고 해서 10%가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보다는 아까 오전에 말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와줄 때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거는 원래 인건비는 대기업에 손금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 간 거에다 추가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간 인력을 얼마나 카운트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중복 지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익금불산입을 해 달라는 건데 현재도 다른 법인세법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익금불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방금 보고하신 대로 이 안건은 소위 계류,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14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크게 기본공제가 있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해 주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수 의원님들 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1년에서 5년까지 제안을 하셨고요. 정부안은 기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지연 의원안은 중소기업에 적용

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는 동 특례가 임금 인상 유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을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공제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세제개편안에서는 세 가지를 다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발표랑 지금 의견이랑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부 측 의견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제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문 작업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같이……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다 포함해서 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02쪽에 나와 있는 정부 발표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연장 부분은 조지연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다르잖아요? 정부안은 기본공제만 연장하는 것이고 추가 세액공제는 연장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증가분 20% 비율을 25%로 올리는 공제율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다 연장하자는 취지이고요. 조지연 의원님께서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임금 증가분의 20% 대신에 25%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 저희랑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은 10%고 중소기업은 20%라서 이 공제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이라는 게 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계 전체 평균임금을 초과하더라도 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 요건을 많이 완화한 만큼 공제율 자체를 올리는 건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고 플러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202쪽에 나와 있는 정부의 최근 발표안 그걸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들을 통합해서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3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정부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장기고용에 따른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및 사후 추정규정 정비 등 통합고용세액 전면 개편과 관련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내용이고 그 주요 내용은 고용기간에 비례해서 공제금액을 점증구조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소고용인원수 초과 고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전액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추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제 개시 이후에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는 전체를 공제 중단하고 있는데 그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제액 관련해서 점증구간 도입과 관련한 산출 방식 비교표는 아래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용 유지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금액 증가를 점증구조로 도입함으로써 장기고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방식 개편을 통한 경정청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가 추정 규정이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후 경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납세협력비용이나 행정비용 절감을 하는 데 지금 개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부분입니다.

공제 개시 이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13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할 부분으로 지금 현행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으로 중견기업은 5명 이상 고용 증가분이 있어야지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고 대기업은 10명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공제액을 표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증가인원수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최소고용인원수를 설정하다 보니까 고용 증가분과 공제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214페이지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대해서 공제액 추정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현행 제도에 비해서

는 고용을 유지할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 대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요.

또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자구 수정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통합고용세액 제도는 사람을,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 얼마씩 더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간에 운영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면 공제를 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것이 지켜졌는지를 보고 안 지켜지면 추징을 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기업주가 채용을 했는데 직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 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깐, 엄청나게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그러면 아예 후불제로 가자, 그래서 지난 1년간 하면 그거에 따라 주고 또 주고 또 주자, 대신에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주자라고 해 가지고 총액은 비슷합니다. 일부 200만 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는 제도로 가서 좀 더 리테인(retain)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저희가 볼 때 고용유인효과도 생기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 거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로계약상으로 1년 이상 계약하면 다 받아 줬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1년 이상 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유인효과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고용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문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 해야지만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인데 이 내용은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혹시 논의해 주시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 5명이라는 숫자는 중견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 규모가 한 4.7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준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복잡합니다마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먼저 손 드셨네요.

○오기형 위원 이게 넘버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넘버원이예요?

○**오기형 위원** 예, 이게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세특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안이다 이런 거고.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실제 심층평가 내용은 일몰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안이 나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오기형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걸 바로 폐지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몰 연장을 전제로 하지만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금 정부안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던 것 중에 지적된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없이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실체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확보가 안 된다.

저는 이거 비판받았던 지점에 대해서 그 비판의 적절성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이 더 잘 아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실장님 하셔도 좋고. 누가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심층평가 결과는 제가 못 가져와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고용의 실질적인 증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이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심층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바꾸는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차관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고용의 유인 효과가 더 클 것인데 현장에서 저희가 기업들하고도 면담을 해 보고 국세청하고도 면담을 해 봤는데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후관리 비용이라든지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한 것이고 그 바꾸는 와중에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조금 더 뒤 가지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간단하고 좀 중요하기도 한 것 같고.

담당자들 복잡한 행정적인, 사무적인 애로 해결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후 정산이, 사전 정산…… 그러니까 사후관리 방식이 사전 관리 방식보다 고용 유지 증대 효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까 하셨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1년 차 때 주는 돈보다 2년 차 때 좀 더 늘리고 3년 차는 좀 더 늘리고. 그런데 총액은 현재 제도 비슷하게 갖고 가되 조금씩 더 주도록……

○**정일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고용 유지 증대 효과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예를 들자면 한 해에 800만 원씩 주면 3년에 24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약간 선불 개념으로 일단 줍니다. 고용계약서만 가져오면 8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가면 800만 원을 더 주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일단 고용계약서만 가져와도 8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고용계약서대로 1년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더 연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일단 그냥 고용하고 나면 그냥 쪽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고용을 해서 1년을 일했는지를 보자, 그러면 일단 고용의 유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혜택을 더 받으려면 2년 차 때 주는 혜택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더 크게 하자. 그런데 처음 1년 차만 비교하면, 똑같은 예를 들면……

○**정일영 위원** 실장님, 그건 아까 거의 다 이해를 했고요 짐작도 했고. 그러니까 고용한 기업주가 그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 유지나 노력을 더 한다 그 가정을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자료 210페이지 보시면요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무슨 숫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보시면 중소기업이면서 지방인 칸을 보시면 현재는 매년 950씩 줍니다, 950·950·950. 그런데 이번에는 1년 차 때 700 그다음에 1200 그다음에 1300,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갈수록 더 주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걸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인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이 사전보다 사후가 더 들어가서 고용효과가 더 크다 그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실제로 보고 줍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구나 입증은 다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건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라서……

○**정일영 위원** 아까 연구 뭔가 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그런데 과거의 기존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 제도……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과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 분석·연구는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12페이지에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심층평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시 공제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잔여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유지해 줘라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공제 인원이 감소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공제를 배제하고 또 추징까지 해 버리니까 기업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층평가 결과에 맞게 저희들이 재설계해서 가져온 겁니다.

○정일영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차관님, 아까 주요 내용 중에 3번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징규정 삭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완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징 안 하는 게 왜 갑자기 빠진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예전에는 미리 돈을 주고 그다음에 보다가 늘린다고 했는데 줄어 버렸으니까 작년에 준 돈 돌려줘, 이런 추징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늘린 거 보고 그다음에 주니까 추징할 게 없고, 실적을 보고 주는 거니까요.

○최은석 위원 그런가요?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년 차 때 늘렸으면 주고 2년 차 늘리면 주고 3년 차 안 늘리면 안 주고 이러니까 추징할 사항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210쪽에 표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 우대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예를 들면 기존에 지방의 청년이다 그러면 첫해부터 1550만 원이 나가다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1900, 2000 이런 식으로 2년 차, 3년 차에 딱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본적으로 신입을 신규 진입을 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에 이직률도 높고 고용 유지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 상황이 쉬었음 청년이 33만 명이 넘어가고 청년 실업이 엄청 심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진입 문턱이 고용주들이 느끼기에 첫해에 나오는 혜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과연 맞는 정책 방향이냐 하는 우려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조세중립적으로 짜려면 이 제도를 바꿔서 1500·1500·1500 이거랑 아까처럼 1000·1900·2000 어느 게 나았느냐에 대한 판단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두고 흘러가는 게 오히려 장기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리고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이것은 통계적인 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기업의 고용담당자들, 인사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을 고용하면 내가 500만 원을 받으니까 고용 안 하고 1000만 원을 받으니까 고용한다기보다 어떤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니까 세제 지원이 나오는 이런 식의 행태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할지 저희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물론 이직률이 높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을 더 유지하기 어렵고 더 영세한 업체일수록 이직률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2년, 3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글썄요, 이게 어찌 됐든 신규 채용을 늘려 보고 가능하면 유지를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장상황이 됐든 본인 근로자의 판단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 정도까지 격차를 거의 2배에 가깝게 주는 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규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말씀하고 가야 되겠네.

제가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업에 혜택을 줘야 되고 중견기업도 아마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중소기업은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중소기업을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미래적금 이런 게 있었어요. 추가고용장려금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에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7~8년 전에 중소기업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초임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높아졌겠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걸 줄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태 주는 방식으로 한 거고, 그래도 중소기업에 한 2~3년은 근무를 해야 경력이 쌓일 거 아닙니까? 3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의 첫 직장을 구한 기간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5개월이에요. 당연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보통 1년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면 한 8월, 9월쯤 가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수준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대기업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정책의 작동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설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놓은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요즘도 디딤돌저축이나 옛날 재형저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청년 디딤돌……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제도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청년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에 대해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제지원 상품도 있고 예산지원 상품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제 차원에서도 아까 고용주와 거기 있는 근로자를 따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을 좀 더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본인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여러 제도가 같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고 있습

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텐데,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데 3.8조 정도 24년도에 된 걸로 되는데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관성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씩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실제 효과가 있게 설계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에 대한 검증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되는데 종래에 해 왔으니까, 또 민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합시다라고 지금 많은 조세지출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3년 된 것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오히려 효과가 더 중요한 거고 효과가 없다면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실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재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말씀한 것 중에 지방기업에 가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은 좀 확보한다든지. 큰 국정 기조나 많은 공감에 있는 그걸 가지고 세게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3년으로 분산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완벽하게 똑 같지 않고 200만~3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방에는 300을 얹어 줬고 수도권에는 300을 뺐다는 말씀을…… 더해 보시면 수도권에 주는 걸로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고용요건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아예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도록 만들어서 나름대로 좀 고안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만큼은 제대로 된 변화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하고 지방기업에게 확실하게 이 관련된 예산을 다 그리 가게 바꿔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차관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현행도 있지만 대기업에 보면 우대근로자 고용할 때 이 혜택을 주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본적으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을 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등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15~34세 청년 고용할 때 대졸 직원들, 신규든 경력이든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 청년들 다 가고 싶어 하고 대기업은 또 돈도 많고 그런데 청년들 고용한다고 이 세제혜택 주는 게 맞나요? 조금 이상하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견까지 기업도 이해는 가는데, 1년·2년·3년 차 개정안 다 이해가 갔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청년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현행 제도 안에서 대기업은 저희가 굉장히 거의 최소화

한 수준입니다. 말씀처럼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주고 나머지 다른 상시근로자 할 때는 안 준다든지 우대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은 3년을 주는데 대기업은 2년만 주고 금액 자체도 보시면 1년에 4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을 고용해서 2년의 혜택을 받아도 중소기업에서 첫 번째 받는, 한 명의 고용 혜택보다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소위원장 박수영 대기업 CEO 하신 최은석 위원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최은석 위원 실은 지금 대기업들이 어찌 보면 자동화 투자나 AI 같은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줄이려는 니즈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대기업에 최소한도로 좀 놔 두면…… 제가 실은 이걸 가지고 사람 숫자를 얼마나 더 늘릴까 이렇게 보고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업에서 인력을 조금 늘릴 수 있는 혜택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대기업들이 인원 줄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기업들이 많이 노력하는 그런 유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유인이 조금 되기는 되겠지만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대기업들 지금 100조 투자한다, 삼성이고 현대고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1만 명의 청년 고용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세제 혜택 본다고 채용하고 안 본다고 채용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대기업이 필요하면 뽑아 쓰는 거고 다른 필요성이 적다 그러면 안 뽑고.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 희망자들은 무조건 현대든 삼성이든 어디든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싶어 하고 대기업들도 또 채용을 하는 거지 이 혜택 때문에 대기업이 안 할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에 최저 고용한도를 다시 10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는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는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세제지원 자체 하나만으로 모든 행태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세수 효과를, 조세지출을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파트로 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방금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최은석 위원 저는 정말 대기업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래도 사람을 뽑지 말까 하다가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정일영 위원 대기업이 생각보다 좀 쏠쏠하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CJ가 쏠쏠한 거 아닙니까?

○최은석 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정일영 위원 삼성전자 이런 데, 현대차 엄청나게……

○최은석 위원 그런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데……

○김영환 위원 그런데 CJ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삼성, SK밖에 없기는 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는 게……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안도걸 위원님한테 얘기 들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이걸 세수의 증감을 고려했다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 그걸 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여러 가지를 같이, 세수도 감안하고 집행의……

○안도걸 위원 세수도 감안하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안도걸 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 중립적인 건 아니고 약간의 세수감이 더 큼니까?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로써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최소고용인원 문턱을 놓고, 일단 문턱을 넘은 경우에는 또 혜택이 크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조세 중립적으로 한 거지요? 세제 중립적으로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단순히 효율성 차원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방을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똑같은 금액이라도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조세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단가의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 그쪽 기본 보면 평균을 지금 950을 잡았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걸 좀 차등을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방은 좀 더 늘렸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방은 늘리고 수도권은 좀 줄인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수도권을 줄였다? 왜냐하면 1년 차에 많을 것이고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안도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크게 보아서 저는 이걸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고 이것에 대한 납세, 행정비용 이걸 절감하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약간 우대를 줬다라는 것, 단가를 좀 조정한 것 그거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만 고용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좀 더 끌고 가게끔,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꾀하는 부분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이것 일단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큰 거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소위에서 논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되었는데 남은 부분 마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이것 빨리 서둘러서 짧게 보고하고 6권은 끝내고 보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그래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227페이지, 개편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이고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된 발의안들이고요. 청년정규직 등 우대공제 대상에 대해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29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같은 내용이니까 함께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그리고 다음 안건은 233페이지고 중소기업 청년등외상시근로자입니다. 아까 우대근로자 있었는데 그 외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똑같은 내용이네요.

○전문위원 정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고 이건 수도권 밖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똑같은 것이고.

○전문위원 정지은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 연령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최은석 위원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이건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전문위원 보고하시고요.

○전문위원 정지은 내용은 60세 이상 근로자 연령요건을 두고 있는데 55세로 완화하는 부분이고 이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연령이 55세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세특례법 등 다른 세법상으로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사.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으로 246페이지고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적용기한 연장 건인데 하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250페이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두 가지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구요.

240페이지에 있는 바 항목, 최은석 의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정부 측 의견은 뭐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60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함부로 지금 손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55~60세는 사실은 활발하게 고용률도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연령을 내려서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제가 차관님 말씀하신 전체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게 실은 대기업에서 지금 55~60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생산직은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신분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데 비해서 실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 정도 되면 정말 제가 어떨 때는 연민……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진짜 연민을 느낄 정도로 되게 회사에서 입지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52세, 53세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회사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본인도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눈치 보는 세대가 55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0세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요즘 최근에 만혼 추세 때문에 60대보다는 55세가 좀 더 결혼을 늦게 하고 애들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55세쯤 되면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사무직들이 회사에서 정말 버티기 어려운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들을 55세로 낮춰 주면 그렇게 사무직들,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55세, 60세 이 사이의 되게 어려운 구간을 좀 더 회사에서 잘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것이다. 이걸 되게 제가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55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벌써 55세예요, 김영환 위원님?

○정일영 위원 용어가 고령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최은석 위원 이게 고령자는 아니지만 사무직들 중에 55~60세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저는 되게 크다, 당사자들한테도 되게 절박할 것이다 이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 55세 생산직이 아니고 사무직.

○최은석 위원 주로 사무직이 거의 해당이 많이 돼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 뭐 말씀하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정년연장 논의가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한 10여% 정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 주로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는 60세 정년을 보장받기는 하지만 대기업

도 사무직,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은 이미 정년이라는 게 무의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만 돼도 나오서 가지고 재취업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에 관한 제일 큰 논쟁이 되는 지점들은 진짜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는 많은, 특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또는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거기는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느 회사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답니다. 임금피크제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오히려 2개 서로 다른 노조끼리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문제점은 이게 사회보장제도와 연동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직무직급제 갖고 논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호봉제 때문에 논쟁을 새롭게 하고 있고 지금 정년연장도 다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복잡미묘한 이슈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논의를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그런데 아무튼 큰 비판들이나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앞서 65세 이상 저축 세액공제를 할 때 65세를 70세나 75세까지도 얘기 나오고 그것처럼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전반적으로도 사회 전체가 그렇고 정년연장하는 것도 그런데 이걸 낮춘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임원, 이사 이렇게 되면 50세, 그러니까 55세 전후로 해서 많이들 나가고 그렇기는 하는데 생산직이나 현장 사무직들, 그러니까 이사가 아닌 부장 이하 일반 직원들은 거의 한 60세까지 지금 하지 않나.

○소위원장 박수영 아닌데요.

○최은석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정일영 위원 그래도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 빼놓고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 일반 직원들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55세 이상은 다 하는 것 같던데요. 높이 올라가는 분들은 일찍 나오고.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사오정인데.

아까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기 때문이에요.

○안도걸 위원 최은석 위원님, 현장에서 실감나는, 체감하는 그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기업의 현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60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고용하자는 거겠고 만약에 그걸 55세로 당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풀은 한정돼 있는 데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는 이쪽으로 더 우대를 해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보호해야 될 이런 쪽의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줄지 않겠

느냐 그런 관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면 모르겠는데 경제 국면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계층 간의, 연령층 간의 그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최은석 위원 그게 풍선효과라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5~60세, 그다음에 60~65세라고 하는 이 계층이 누가 지금 실질적인 생활고를 더 겪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는 55~60세에 계신 분들이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애들이 어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고 60세 이상 대부분은 그냥 학교는 졸업했을 분들이 많아서 55세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허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생활비의 그런 압박이 되게 심한 계층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태호 간사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정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정년 논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55세로 낮추게 되면 나머지 법들의 지원체계하고는 안 맞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렇게 된 것 보면 여기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우대공제 대상 고령근로자 연령 요건만 완화시킬 경우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가 서로 상충하거나 어떻게 보면 한쪽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불합리성도 발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같은 취지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같은 취지입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목이 하나 남았는데요. 아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정부 측 의견만 받으면 되겠네요. 육아휴직 복귀자에 관한 문제, 25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246페이지의 사 부분도 같이 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46?

○전문위원 정지은 예, 246페이지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의 이걸 추가공제 건인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지금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같이……

○소위원장 박수영 적용기한 연장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이상은 정부안대로 3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아 부분에는 그뿐만 아니라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제액·공제율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준호 의원님 안이 있네요. 이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그냥 현행으로 해서 연장을 하되, 저희 정부안은 1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은 1년 연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육아 복귀자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켜보고 그때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바꾸면, 내년에 아마 바꾼다는데 그걸 바꾸는 걸 보고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 올 생각이라 1년만 일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부안대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제 이걸 다 끝났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6권은 다 끝났군요.

오늘 7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 금요일 날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내일 나와요. 나와서 해요.

○박성훈 위원 내일 나와서 하지요.

○김영환 위원 새벽까지 하자니까요, 계속.

○정일영 위원 내일 9시에 만나든 10시에 만나든……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우리 안건이 전부 15건입니다. 536건인가 이렇게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속도를 내야 되고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15분이네요. 7시 반 하면 너무 짧겠지요?

○정일영 위원 7시 반에 해요.

○소위원장 박수영 7시 30분에……

○김영환 위원 밥 먹으러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정일영 위원 여기 김밥 먹어요.

○김영환 위원 약속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는 분 있으니까 7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제 어느 자료를 보면 되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제 7권 자료입니다. ‘법인세 분야 2’라고 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조문대비표를 하나 좀 추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안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문대비표를 이렇게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6번 안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해서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로 인해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하도록 해서 과세이연의 특례를 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해외투자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물출자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법인세 납부 부담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다만 좀 적용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외국의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여 조정을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기본적으로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추가로 줄여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국인법인 간의 현물출자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 간단하게……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2021년도에 적용실적이 저조해서 일몰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그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최근에 저희 세법 개정하면서 기업계의 의견을 받았는데 건의사항에 대한상의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많이 되니까 수요가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빨리 드셔야 됩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아니, 45분에 시작한다면서 왜 일찍 시작하셨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야. 45분에 딱 시작했는데요?

○김영환 위원 아니, 내 시계하고 틀려요.

현황을 보면 지금 내국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잖아요.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분에 어떤 구간들이 있냐요, 구간? 그러니까 이 과세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세특례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구간이라는 게 어떤……

○김영환 위원 예를 들면 지분별로, 현물출자 지분별로 별도로 구간이 있는 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건 아니고 그냥 20%……

○김영환 위원 20%의 단일 구간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20%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특례가 다 해당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간별로 뭐 별도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물출자로 생기는 그 차액을 과세이연해 주는 겁니다. 4년 거치 3년 익금 하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되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 금액만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이전 지원세제 관련해서 관련 대상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지방이전 관련 세제는 전체 개요를 9페이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이전 지원세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60조·61조 부분은 공장·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밖이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63조와 63조의2는 공장이나 본점·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그 기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5년부터 10년까지 100% 감면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2년에서 3년 정도 50% 감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정부안과 주진우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관련해서는 18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감면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 플러스 2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연장되는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규모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그 감면 혜택을 좀 더 늘려서 낙후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7 플러스 3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 플러스 5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안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사이전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개시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안이고, 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이 전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19페이지입니다—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부터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분산을 위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결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지역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유사 조세특례제도 대비 가장 장기간의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가 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히 또 세액감면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지방이전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좀 더 확대,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거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 부분에 좀 더 많은 확대를 했고 기본적으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주진우 의원안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대체로 조금씩 같이 늘어나는 점은 비슷하지만 저희랑 차이 나는 것은 주진우 의원안에 따르면 수도권 연접지역과 지방광역시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차이가 필요하다 또는 중규모 도시

하고 지방광역시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붙었다 이런 점에서 지원의 갭이 너무 좁아진 측면이 있어서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21쪽에 이 효과가 인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인지도야 알겠고, 그런데 이게 기업 이전 결정에 기여했다는 이 퍼센티지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특례제도 때문에, 이 세금감면제도가 기업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전체 이전한 46.4%, 공장 51.5% 이전한 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업 성과, 투자·고용·생산성 증대 이것은 이전한 지역에서 일어난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은 뭐 당연한 거고 앞의 퍼센티지는 뭐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이것은 이전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층평가할 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46.4%, 51.5%가 이전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영향이야 당연히 줬겠지요. 조세특례혜택 주는데 영향이야 당연히, 양도세 이런 것 줄여 주는 건데……

그런데 계속 이 심층평가 결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줬냐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 조세특례가 수혜기업들이 이전하는 데 기여한 퍼센티지라고 그럴까, 지방이전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세특례제도가…… 예를 들어 설문조사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몇 번째로 기여했냐, 몇 퍼센트 기여했냐, 대충 그런 계량적인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기업들에게 기여를 했지. 이거야 뭐 심층평가하나 안 하나, 조세특례 해가지고 지방이전하면 이렇게 세금혜택을 주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게 이런 뜻 아닌가요?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본사가 이전한 기업은 78%가 알고 있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공장을 이전한 기업은 65.4%가 알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제도 때문에 옮겼느냐고 물었더니 본사 옮긴 기업은 46.4%, 공장 옮긴 기업은 51.5%가 이 제도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래서 옮겼다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이 ‘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아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정일영 위원 어디에 적혀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21쪽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있는 본사와 공장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옮긴 게 아니라 우리 지방이전제도 자체가 본사를 옮겼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 공

장을 옮겼을 때 지원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 질문은 결정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본사 이전 시에 물어봤을 때……

○정일영 위원 기여는 뭐 1%도 기여한 거고 100%도 기여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매기면 ‘기업을 이전하게 된 계기, 첫 번째 이유’ 그러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열 가지 중에 제일 열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나 가중치, 중요성을 갖고 있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를 정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박성훈 위원 간단하게……

○소위원장 박수영 예,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실장님하고 차관님, 이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인데 사실상 수도권 연접지역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이나 부산보다 더 작은 중소도시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지역 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한 흐름이 지방이나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전 세액감면 효과가 좀 더 실효성 있도록 부산이나 광주, 대구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지역 중소도시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7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중규모의 경우에는 7년 100% 감면이었는데 10년 100%로 3년을 늘렸고요. 50% 3년을 5년으로 늘려서 중규모 쪽은 그 외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지방의 경우에는 1년을 더 추가했습니다, 지방광역시에는.

○박성훈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는 지금 이 설계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22페이지에 세 번째 지적한 것 보면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 수혜기업 1584개 중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경기도가 1116개 그리고 인천, 충남, 충북 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 제도도 저는 꼭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충청권 밑으로 내려가야, 충청권도 그래도 기업은 이전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실 이 제도 하나만으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도 사실 그런 것의 일면이고 이 제도 자체도 자기 자산을 팔고 갈 때 혜택도 주는 것이고 또 거기 가서 돈을 벌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특구제도들도 많습니다. R&D 특구, 평화도시특구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후발전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특구들이 많아서 사실 지방으로 갔을 때 여러 혜택들도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이 제도가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제도의 틀 내에서 그래도 좀 더 지방이전을,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액감면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혜택을 좀 더 차별화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제도만으로 지방이전에 파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차원에서 지역을 차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 이 제도는 실제로 제도의 목표도 달성 안 되면서 그 혜택은 여전히 수도권에 주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수도권은 아예 제외해 버리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 수도권은 사실상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되는 것은 인천 강화·옹진하고 네 군데밖에 안 되고요. 사실……

○**정태호 위원** 아니, 경기도가 1116개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것은 아마 지금 현행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야만 일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제도 안에는 수도권이 포함돼요, 안 돼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강화·옹진이라든지 인구감소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일부 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수도권이라는 칸이 있기는 있지만 이 제도로 수도권 내에서 움직일 때의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여기 통계가 있잖아요. 수혜기업 1584개 중에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경기도가 1116이잖아요. 그리고 인천 206개인데 이게 아마 강화 이쪽일 거예요. 그 두 개만 포함했더니—그러니까 수도권이지요—83%예요. 충남·충북까지 하니까 92%,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혜택을 보는 데가 수도권 인근에 한 것으로 집중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남, 호남, 강원 쪽으로 좀 더 분산을 시켜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그게 아니겠냐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 여기 숫자 나온 것은 과거에 이전해 가지고 아직 그 혜택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밖도 포함했었다가 24년에 빼 버렸습니다, 이 제도를.

○안도걸 위원 과거 통계다 이거지요,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과거 제도에 남아 있는 통계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연접지역에 2년에서 3년으로 굳이 뭐 하러 늘려 주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수도권 연접지역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권 빼도 지원창을 판에 왜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주냐 이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은 수도권하고 수도권 연접지역은 현행 유지하고 광역시, 중규모 도시 그 외만 늘려 주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현행 제도 자체는 수도권 밖으로 벗어나면 그래도 아예 혜택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수도권 연접지역은 사실은 충남 당진이라든지 아산 이런 데인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찌 보면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래도 일단 수도권을 벗어났으니까 조금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제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할 때, 이번에 아주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관련해서 수도권 연접지역, 그러니까 15쪽에 보면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정태호 위원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

○정일영 위원 인구감소 아닌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런 지역 맞네, 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물론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정일영 위원 인구가 대부분 는 지역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게 과거에 설정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행정구역상 붙어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걸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증가지역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정일영 위원 아니고,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붙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일영 위원 홍천은 내면은 또 제외, 내면은 뭔가? 횡성은 강원도인데, 수도권하고 붙어 있지는 않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마 경기도하고 행정구역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최기상 위원님이 끄덕끄덕하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도의 설계를 제가 아까 여쭙본 게, 기업의 남방한계선이 평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밑으로 세제 혜택을 좀 더 주게 되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수도권 연접에만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전을 의사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수도권이나 수도권 연접지역 또 평택까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로 넛지(nudge)를 해 가지고 그런 의사구조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려면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지역은 지금처럼 두고 지방 및 그 이하는 정부안처럼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같은 제도이고 지방이전 지원세제에 대해서 감면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주진우 의원안이 있고, 정부안은 공장이전 세액감면과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이전한 지방에 대한 투자 및 지방근무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추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 안은 이 두 안에 대해서 수도권에 기준 이상의 사업집행부서를 둔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이전한 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추정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과 등에 따를 때 기존 소수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면한도를 두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실 사항으로 정부안은 지방이전 세제에 대해서 유사 제도 대비 높은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누계액 대비 70% 그리고 상시근로

자 수 1인당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특구 등 관련 유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누계액 대비 한 50% 정도의 감면한도를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지방이전 제도를 좀 더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한도를 신설했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70% 그리고 이전본사 상시근로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 감면한도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특구의 경우는 보통 투자누계액의 한 50%를 한도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70%까지 해서 좀 더 높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주진우 의원안에 대해서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총이나 이런 것까지 사후추징 요건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은 좀 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갔다가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후추징인데 주주총회를 거기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소위원장 박수영 그 뒷부분,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25% 그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방금 주진우 의원안에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인터넷기업 중의 하나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많은 인원이 갈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다 서울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지 사실상 이전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세제 혜택만 받고 기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금방 복원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제 장치를 제안한 것이라서 이 중의 일부라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후추징 요건이 있습니다. 사후추징 요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임원 중에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안 되고 미달하게 되면 사후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총괄국장입니다.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적게 내려가면 감면이 적게 이루어지고 많은 인원이 내려가면 많게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새로 만드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현행 제도가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현행 제도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혜택을 받은 다음

에 살금살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님께서 둘 중 받아들일 만한 것은 없느냐 그랬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것은 다시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가 아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차관 지휘하에 주진우 의원안, 제대로 본사 이전을 하게 만드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한 가지 추가말씀으로 아까 전에 감면한도 만들 때 보면, 25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간 다음에 무조건 다 혜택을 주지 않고 감면한도를 뒀는데 거기 보면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 곱하기 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사 이전을 많이 갈수록 감면한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덜하면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첫 이전 이후에 서울로 다시 살살 복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추가 논의할 때 기재부 의견을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관련 중 일몰 연장과 관련되는 건입니다.

지금 현재 조특법상 지역특구로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 47·48페이지에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지금 관련 제도들을 정리하였고 감면 내용은 감면이 높은 순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지역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00% 그리고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특구별로 지역특구의 개요와 지정 현황에 관해서도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적용기한이 일몰 도래하는 안들이 위기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장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 활성화와 고용안정, 지역산업 위기 완화,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각 지역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특구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특구 관련해서 각종 재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130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특구별로 관련 재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열 가지 각종 특구가 있는데 각 특구가 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3년간 전체를 다 연장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49쪽 표를 봐 주시겠어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금융중심지 특구는 조세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가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알기로는 금융중심지가 아마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이게 여의도와 부산하고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옆의 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보고하세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입니다.

금융중심지 관련해서는 3단계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 완료 후에 지속적인 기업 유입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2단계 완료가 됐고 3단계는 금년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조세지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말씀을 추가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가, 그때 보통 부산에 이전한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공기관들이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실적은 적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공공기관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법인세가 있으면 하는데 보통 여기에 입주한 기관들은…… 제가 그 리스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개 기관이 입주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거래소도 있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거래소도 있고 예탁결제원도 갖고 도시주택공사, 도시금융공사……

○박성훈 위원 주택금융공사 거기도 법인세, 소득세를 다 내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기신보, 기술신보 이런 큰 것들이 많이 갖는데 어떻게 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나요?

○김영환 위원 조세지출 실적이 없네, 진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금융중심지라는 게 부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산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의 문현 그쪽을……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거기 제 지역구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 전부 그 문현동에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전한 기관은 저희들도 파악해 봤는데요. 세제 실적이 왜 없는지는 다시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자료를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를 내도록 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일단은 그 자료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이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지금 일몰 연장 예정인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전부 똑같은 안이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번 항목이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의무를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법인세율에 비해서는 저율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는 9%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2%의 저율과세 혜택을 조특법에서 주고 있고요.

80페이지부터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표구간 또는 세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은 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상반되는 안으로 지금 두 가지가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합법인은 농어민이라든지 지역사회 등에 대한 복지 향상 기여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영리법인보다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저율과세를 확대한다든지 또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율과세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분석 결과를, 관련 내용을 보면 과표 2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인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은 8.3% 수준으로 나오고 일반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5%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안 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농어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높여서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거랑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82페이지 보시면, 조합법인하고 일반법인의 우대되는 폭을 보면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원 사이에서는 10%에서 7%까지, 현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초과되면 10% 더, 3000억 원까지 올라가면 13%까지 일반법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에서 20억 초과에 한해서 12%를 15%로, 3%p 올리자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과 조합법인의 세율 문제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이것 잠깐만……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 사안도 계속 조세지출 내역 중에서 보니까 8번째로 큰 규모인데, 논쟁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도 별도의 심층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제안이, 어쨌든 공익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너무 제도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온다, 뭔가 조건부로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여전히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서 우대가 있고 이것을 좀 더, 기존 조세지출을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결국 농협에 대한 세율 인상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법인하고 조합법인하고 법인세율을 보니까 2022년까지 봤을 때 일반법인은 변동이 없는데 조합법인은 12%였는데 15%로 오히려 3%p 증가하는 이런 결과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합별 합병을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합병한 조합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특히 20억 초과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최근 5년간 합병 내역을 살펴보니 총 6건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서울 인상 시 3개 조합이 합병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제가 찾아본 담양농협 같은 경우는 합병하지 않았다면 9% 세율을 적용받는데 정책으로 인한 합병으로 인해서 1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농해수위에서 결의안을 보낸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는 모양이지요?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하면 당연히 20억 초과가 돼 버리고 세율이 3%p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수익을 20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 전체 조합법인이 4100개인데요. 이 중에서 20억 초과 부분은 12%, 516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고도 2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협 조합법인에서 기본적인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하면 이것은, 이 농협 조합법인에서는 세무조정을 거의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그 부분 이미 손금을 산입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조합법인의 고유한 목적하고 관련된 일을 지장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합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량한 조합이 합병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면, 과표가 늘어나면 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부실한 조합을 합병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과표가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부실 조합하고 우량 조합하고 합병을 하는 그 경우에도 과표가 꺼진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손실을 받게 되니까요, 과표가 당기순이익이니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첫해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량 조합하고 합병해서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좋아지면 다시 또 20억 이상 올라가는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M&A 하지 안 될 것을, 손해 볼 것을 M&A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로 M&A, 부실한 합병을 조정하기 위한 게 조합들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지역조합법인들이 대부분 다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거든요? 그렇게 파

악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20억.

○윤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 이하인, 대부분 하여튼 200억 원 이하다라는 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200억 원 이하 일반법인들의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보통 200억 원 이하 같으면 전체 평균 실효세율이 12.5%, 농협도 한 11.3%, 실효세율로 따지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명목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효세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통계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실효세율 구간을……

○윤영석 위원 예, 실효세율로 한번 따져 보시면, 실효세율로 보면 세금 내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세무조정 같은 것도 훨씬 간이하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구간을 쪼개는지……

○윤영석 위원 일반 중소기업들이 실효세율이 한 12.5%……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2.5.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세무조정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이 12.5면 이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명목세율이 12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윤영석 위원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명목하고 실효세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 뭐 보고하실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여기 83페이지 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실효세율 비교가 있는데요.

○윤영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8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윤영석 위원 이것은 23년 자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년 자료예요. 더 최신 자료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수를 해서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합들은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윤영석 위원님 말씀은 24년 자료를 보면 조합법인의 실효세율하고 일반법인, 즉 중소기업들의 실효세율하고 큰 차이가 없다?

○윤영석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명목은 차이가 나지만?

○윤영석 위원 겨우 한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기재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윤영석 위원 예. 이 심사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여기는 차이가 많이……

○윤영석 위원 2024년도는 폭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합들의 공익적인 그런 기능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윤영석 의원님 지적이신데 기재부는 관련 최신 자료를 확보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오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85페이지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같이 논의돼야 되겠군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이고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3년 연장안이고 이인선 의원님 안은 5년 연장입니다.

97페이지 부분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적용기한 연장을 3년 하나, 5년 하나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러면……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의 의견은 이것이 3년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년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도 2년 연장부터 5년 연장안까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는 3년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으로 이 조세특례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2년부터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현행과 같이 3 플러스 2의, 100%·50% 감면 이후에 5년간 30%, 이후 영구적으로 20%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적용기한 연장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은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체가 다양한 재정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이렇게 5년 이후부터 30년 영구적으로 20%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게 장애인 사업장 해 주게 되면 다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런 데로 확산될까 봐 걱정한다는 뜻인데, 장애인이 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태호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니까.

○정태호 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박수영 마이크 쓰시지요.

○정태호 위원 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 작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석……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의원님 안이 무제한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세감이 얼마나 나오니까? 혹시 기재부 계산해 봤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고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12년간 25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얼마 안 되네. 12년에 256억, 1년에 한 20억 정도 된다는 얘이지요? 크지 않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은석 위원 김영환 위원님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동조해 주시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저는 무조건 간사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간사님 뜻을 무조건 따른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한번 해서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이런 것을 한번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글썄, 세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 표명을 이렇게 제도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가 상당히 어렵다는 듯한 표정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도 계속 유사한 요구를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위원장 박수영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일단 먼저 이런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장애인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비교가 되나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바로 앞에서 논의하신 사회적기업도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기형 위원 조합 좀, 큰 것 좀 털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총량 문제가 있어서……

○정태호 위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같이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최은석 위원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진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참 힘듭니다.

○김영환 위원 한마디해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사업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분들의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생산을 하거나 그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실제 다른 중소기업과 다른 사회적기업과 좀 차원이 다른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를 여하튼 이끌고 있다는 게 저는 기적처럼 보이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일례로 하자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진성준 위원님 지역구 내, 제 지역에서 하시는데 빵을 만드는 장애인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장애우들과 함께 그 사업장을 정말 간신히 간신히 이끌고 빵을 팔고 다녀요. 저도 매해 설 때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빵을 사다가 좀 먹고는 그러는데 간사님 말씀대로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실무과장 의견을 한번, 장애인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정책과장 김문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둘 수는 있는데 결국에 담세력에 대한, 세후 이익에 대한 과세니까 이 이익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애인이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익이 더 적다면 낼 세금이 더 자체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항구적으로 그 이익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상 너무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 기회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최은석 위원** 과장님 논리가 방금 좀 되게 영성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요.

○**정태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기업이 늘어나지…… 장애인 고용을 보면요 지금은 어디로 정책이 가야 되냐면 기존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라고 백날 얘기해도 안 늘어납니다. 결국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작업장을 만들어 줘야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냥 부담금만 내고 채용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기업들이.

○**정태호 위원** 그럼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요, 뭘.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중에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은석 의원님 원안대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좀 혜택을 드리더라도 현재 3년 100%, 2년 50% 해서 이후 5년간 3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영원히 20% 그 부분은 정말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5년 더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박수영** 간사님이 강하게 주장하셨으니까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 최은석 위원님이 타협을 하세요.

○**최은석 위원** 저는 뭐 일단 거기까지만 한 걸로도 큰 진전이 있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해서 다시 좀 더……

○**김영환 위원** 5년간 30%까지?

○**최은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5년간 30%까지.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은석 의원님 안에서 5년간 30%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한 연장은 3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소위원장 박수영**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감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 2~5년까지 연장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도 특례기한 연장밖에 없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3년 가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 3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3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의입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의 감면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견기업, 대기업과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은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로 시행령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유사한 다른 지역특구와 비교할 때 높은 감면율에 비해서는 업종 제한이나 최소고용인원수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면제도 설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기지역 자체가 기업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한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기지역에 대한 감면은 상대적으로 감면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5년간 100%, 2년간 50%인데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요건 없이 창업만 하면 즉시 세제지원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 감면액을 감안할 때 현재 투자나 고용과 같은 어떤 감면요건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특구도 보면 최소한 업종을 제한하든 아니면 어떤 감면한도를 실적에 따라 두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감면한도를 실적에 따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차관님, 이게 왜 감이지요?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절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는 왜 감 1000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기한 연장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몰을 3년을 더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원래 더 늘어날 게 조건을 걸어서 덜 늘어나는 것인데 늘기는 늘어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케이.

위원님들 어쨌습니까?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위기지역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각종 조세특례의 요건이 되는 위기지역의 범위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안도걸 의원님 안, 김성원 의원님 안 모두 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최근에 석유화학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여수시와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오늘 자 발표로는 광양시가 철강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원을 추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대하는 내용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체계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있는 이 제도는 위기지역에 대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기가 다가오지만 선제지역으로 지원된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앞에 있는 1·2·3항에 대한 실제적인 위기지역과 선제지역 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도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저희가 다른 지원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재편이 사실 이런 동네는, 이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사업재편에 따라 채무상환이나 투자지원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을 때 그에 대한 세제를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음, 뒤에 논의가 됩니다. 그걸로 함께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와 있지요. 특히 철강하고 석유화학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기는 지금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소재라든지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산업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사업재편, 구조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지원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해 줘야지요. 그래야만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나름대로 유지해 가지고 버텨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통상 일반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조금 차등화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폐업을 해서 매각할 때 양도차익 같은 것에 대해서 이연해 준다는 것이고 안도걸 위원님은 선제적으로 팔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 같으면 뭔가 사업을 일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줄이면 자산의 매각이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재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재편했을 때고 안도걸 위원님은 그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그게 결국 초과 생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생산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별개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범용성 제품과 라인에서 고부가가치라인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폐합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겠고 통폐합된 기업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감은 얼마나 되나요, 세액공제 해 주게 되면? 계산해 놓은 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있는 게 위기지역에 대한 항목인데요. 위기선제지역 이니까 지금 위기지역까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체계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위기지역하고 위기선제지역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평균지표에서 생산이 10% 줄었냐, 5% 줄었냐 이 차이인 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아주 기술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이를 둘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누구나 다 알잖아요. 포항제철, 예를 들어 여수의 석화단지, 지금 문제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동원해 일단 살려야지요. 산업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가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석유화학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정부의

의지보다는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는 노력을, 아직까지도 사업재편계획을 갖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 경제부총리께서 두 번이나 산경장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데도 여전히 무언가 좀 정부가 결국에는 도와주겠지라는 차원으로 계속 미적미적대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먼저 지원이 나가면 사업재편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석유 화학단지에 대한 우리의 재원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정부 측 고민을 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안대로 가자?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꾸 오래 디베이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번 맑은 정신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132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입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동업기업과 관련된 각종 가산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서 동업자에게 배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산세 배분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이런 것도 법률에 규정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가산세이기 때문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산세를 하거나 추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물론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하니 마니 하는 것도 법률에 규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 개편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개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건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박수민 의원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고려해야 되는 환류대상에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같은 취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 합계액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 기업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배당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142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기업의 소득이 대주주에게 주로 환류되는 측면이나 그리고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가 투자, 임금 증가 그리고 상생협력을 통한 환류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 제도 도입했을 때는 환류 대상에 배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을 제외했었던 제도 연혁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제목과 관련해서 지금 일괄해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누락 항목이 있어서 이것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한 혜택을 주고 배당을 오히려 적게 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통해서 디스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여기에 배당을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추가하는 대신에 박수민 의원안에서는 앞에 있는 모수, 기업소득의 60~80%를 건드리지 않고 배당만 넣게 되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더 빠 주게 되는 효과가 되는데요. 기업소득을 늘리고 그것에 따라 배당을 함으로써 배당이 충분치 않으면 이 기업환류세제가 작동이 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이 작아지면 디스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이 늘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늘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든 이쪽이든 배당이 촉진되면 일정 부분 외

국민에도 가게 되고 주주들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민 의원안처럼 내국인만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은 월요일 날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문가인 이소영 위원님 모시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이 부분 복사해서 같이 배포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3건의 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대체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그 과세이연 적용 대상 자산에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이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체취득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체취득을 할 때에는 동종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재산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후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과세이연 적용 대상 자산에 유가증권 등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해서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그리고 유가증권이 새롭게 취득된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그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법인들인 경우에는 지금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해야 되는 의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대학 재정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60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대체취득용 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면세가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는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 종류를 국내 상장법인 주식 및 국공채 등으로 한정할 계획인데 대학법인 수익률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서는 국내주식형 펀드 등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견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체 수입원 발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던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꿀 때도 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대체취득한 자산을 처분 시까지 이연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토지는 토지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대체로 넘어가는 기한을 1년으로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김상훈 의원님이나 안도걸 의원님의 경우에 김상훈 의원님은 여전히 토지만 하고 있고 유가증권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안도걸 의원님은 유가증권까지 추가했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랑 내용이 같고요. 대체취득 시한을 저희는 1년을 유지했는데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1년이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까지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해 가면서 하는 것까지 도와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종 자산끼리 교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사실 다양한 자산을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조세소위에서 그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한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은 안도걸 의원님 안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먼저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동종 자산끼리 대체취득을 허용했는데 부동산에서 유가증권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취지 자체가 지금 묶여 있는 부동산 유동화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용 투자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여기에 시행령으로 해서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겠다 해 가지고 주식하고 국공채로만 지금 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굳이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간접투자자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대체취득 시한 문제네요? 2년, 1년?

○**안도걸 위원** 그리고 대체취득 시한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새로운 걸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환하는 데 꽤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 내에 새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허용했으니까 2년 정도 시한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매각·매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가지고 저는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수익자산 이걸 할 때 다 교육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탈행위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년, 1년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교육부랑 좀 더 한번 대화를 나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동종 자산, 이종 자산은 여기서 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사실 이게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유가증권을 열었을 때, 지금이야 주식시장이 좋은데 이게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학교에…… 물론 학교에 그만한 인적 재원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기본 재산을 운영하는 데도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간접투자상품들이, 차라리 저는 그런 데가 더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 매번……

유가증권시장이랑 국공채도 마찬가지로 국채시장이랑 마찬가지로 국채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변동성이 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을 관리할 만한 그런 전문성 있는 학교 운영 담당자를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전문가들이 또 요건이 필요하냐 이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재산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열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이게 재정 확충이 아니라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재부가 판단하고 했는지?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상품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데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은 우려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기본자산인데 이게 또 위험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이걸 교육부라든지 또 대학 측하고도 좀 더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여는 것 자체는 좋은데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를 할 거냐가 저는 관점의 포인트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령 사항이라고 하니 기재부에서 시행령 만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률사항 중에서 동종 자산, 동종 기본재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차관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건 이종 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취득 시한 2년 이건 어떻게……

○정태호 위원 그런데 그건 대단히 예민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동종, 아니면 2년?

○정태호 위원 이종.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

○정태호 위원 그건 교육위원회에서도 되게 현안이 돼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교육위 쪽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정태호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오늘 결정하지 말고 교육위원회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게, 저희가 일단은 재논의하는 걸로 분류를 하고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교육부 의견을 들어야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교육부 의견은 기재부가 들어야 되고 우리는 교육위원회 의견을 들으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는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추정 사유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제도 추정 사유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후 4년 이내에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는 경우에도 부분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개정안은 부분복귀 대상 확대에 대비해서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동 제도의 세액감면율이나 지원 기간이 다른 조세특례 대비 좀 높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현지에 있는 사업장을 완전히 다 줄이지 못하고 국내에 먼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추징을 해야 됩니다. 추징 사유를 법률에 담아 놔야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한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축소라고 하는 게 공장의 캐파를 줄이거나 고용 인력을 줄이거나 뭔가 딱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소위원장 박수영 뒤의 과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과장입니다.

산업부에서 축소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축소한 양에 대해서. 그래야지 축소가 확인되고 국내에서 사업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유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준은 생산량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이걸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기존의 2호가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고 3호가 축소해서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폐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한 경우면, 양도·폐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애는 거고 그런데 축소는 약간 부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면 차라리 3호를 약간 손을 봐서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게 약간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완전히 양도·폐쇄랑 축소는 좀 다른 카테고리인데 이걸 약간 뒤섞는 것 같아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전문위원실하고 조문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변호사인 천하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자꾸 조정을 저하고 의논해서 하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제도 개요 부분이구요.

170페이지의 개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7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해서 관련 제도는 그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이게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운영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관련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1%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은 그 공제요건 중에서 비율 하한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함과 동시에 그 기준을 전체 해상물동량 중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서 운송한 물동량 비율이 30%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

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율 요건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현행 운송비용 기준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제요건을 삭제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이용해서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전체 해상물동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그 공제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산출 방식을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와 원양노선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비용의 1%를 추가 감면하도록 개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보면 운송비용의 최소 충족치 40%를 좀 상회하는 우수 화주가 한 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제요건을 물동량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안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원양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을 관련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양에 관해서는 해운법상에서도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선주와 화주의 상생을 지원하고 원양 해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건을 새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현행 규정의 기본적인 기준이 전체 비용에 대한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게 물량 곱하기 단가인데, 아시다시피 해양 운임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요건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물동량으로 하자, 그러면 본인들이 국적 선사에 맡기는 비율을 정할 수 있으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동량을 잡았고, 박성훈 의원님은 물동량하고 비용을 오어(or) 조건으로 같이해서 하자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물동량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평균이 한 38.8%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로 하면 현재 6개 선사가 12개 선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혜택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박성훈 의원님처럼 30%로 하게 되면 평균값이 38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한번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많은 분이 대거 진입할 것 같아서 40%로 허들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로 한 16%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

상 비용을 갖고 기준으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건을 현재는 그냥 비용이 ‘매년 얼마나 증가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고 저희는 오히려 이참에 연근해하고 원양 중에서, 연근해는 대부분 저희가 선복량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원양 쪽은 아직도 회복이 많이 덜 됐기 때문에 국적 선사를 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원양에 대해서만 따로, 해외 선사하고 국내 선사 비중을 계산했을 때 25%가 넘는다면 추가공제를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시장의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아마 물동량 기준을 자국 적치율 이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지출 비중 40% 이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때 21년도에 1개 기업, 22년도에 3개 기업 그리고 23년도에는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혜택이 6개 기업이 아니라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고 저희는 조사를 했고요. 특히나 국적 컨테이너 선사 이용 비중 40% 이상 달성이라고 하는 게, 차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업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 국적 선사 선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적 선사 전체 선복량을 따져 보면 119만TEU거든요. 이게 HMM을 비롯한 그런 국적 선사의 전체 선복량인데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의 약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적 선사 전체 선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선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이러한 우수 선화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이것 인증받으면 3년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하고 해수부차관을 지내신 박성훈 위원님하고 통계 숫자가 아예 다른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이 부분을 해수부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통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물동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인 38.8%에서 그것만 약간 넘으면 될 것 같아서 40%로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봤었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 통계가 지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다시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해수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확인도 하

고 다음에 재논의할 테니까 그 전에 박성훈 의원님실하고 기재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숫자를 어느 쪽이 맞는지 베리파이(verify)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건 이 제도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3년 안과 5년 안이 지금 발의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늘 하듯이 3년으로, 위원님들……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냥 막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일단 가변하고 지금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정책목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한테 세액공제를 주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많이 이용해라 이게 목적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잠깐 차관이 말씀드렸는데요.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서 국적 선사의 선복량이 지금 그 이전, 15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이 됐는데 그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다른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또 뭐 있어요? HMM이 있고 그다음 또요?

지금 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시장은 매우 좋지 않나요?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매우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조세지출이 얼마 많지도 않은 건데 굳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이 시장이 끌고 가는 좋은 환경에 뭐 어떤 걸 더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일몰을 연장하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어떤 좋은 조건이 어떻게 더 나아지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적 선사에는 HMM하고 고려해운하고 장금상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선사를 지금 돕기 위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당연히 우리나라 선사를 더 지원하고 많이 활용하라는 차원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우리나라 선사를 많이 활용하라는……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물동량을 이용하는 게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HMM은 주가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사는 지금 좋은 거고. 그렇지요?

○**박성훈 위원** 차관님,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 언급하세요.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게.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해운 선사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김영환 위원** 아니, 정말 안 좋은 곳이면 구조조정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도와준다고 되는 일이나고요, 조세지출 얼마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영** 자,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이랑 실장님이 해운업계의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좀 검토해서 김영환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앞의 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라서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전에 김영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고요. 프로젝트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강한 도관의 성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득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제시면 3년 연장,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기업에 대해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 정진욱 의원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6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하는 내용으로 확대를 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법인에 한해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안 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90페이지 부분입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현재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업재편을 위해서,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해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아까 이 부분 하신 건데 혹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없으시고요?

○안도걸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요?

차관님, 정진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6년·5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4년·3년인데 저희가 그거를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5년·5년으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진욱 의원님은 산업위기지역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6년·5년으로 하는 거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고 관련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합계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통시장 등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지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업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1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출분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의 한도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라서 전통시장 지출분이 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

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한 지금 확대하고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24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업무추진비 지출분에 대한 추가 한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안대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손금산입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계되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35번도 그러면 전문위원님 마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박수영 의원님·송언석 의원님 안이고,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대상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합계로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송언석 의원님 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 상점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은 손금산입 한도 자체를 늘리는 부분은 아니어서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전통시장 지출액에서 온누리상품권 지출액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는 상점가 등에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에 전통시장에 지출하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두 제도가 같은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업추비를 통해서 상품권을 사서 그걸 직원이나 다른 곳에 줄 때 이거를 손금산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 사이에서 보면 보다 영세한 쪽에 있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대상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하고 있는데 따로 전통시장에 대한 별도의 특례 세율이, 여기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복성 등을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하나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실제 업무 관련성 없이 쓰기만 하면 그냥 다 10%, 20% 내에서 허용해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업무 관련성 있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오기형 위원 그러면 업무 관련성은 별도로 심사하고 다만 사용 용도를 그렇게 하면 그 한도를 좀 늘려 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둘 다 이렇게 비슷한 취지가 있고 하니까 저는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 둘 다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아까 손 드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기존의 전통시장 지출분 있잖아요. 24년부터 이게 아마 실행이 되면서 4억 원…… 이게 세액별로 잡힌 것 같은데, 공제율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뭘니까, 전통시장 지출분이? 기존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뭔가를 사 가지고 그걸 업무에 썼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거는 무슨 이런 상품권 형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이 그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떤 용도를 정하지 않고 전통시장에 썼으면……

○안도걸 위원 영수증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단체 회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 다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더 넓은 의미의, 30억 매출 이하로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좀 더 타깃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재정의 여력을 감안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가맹점 수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의 약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걸 추가하게 되면? 제가 발의한 온누리상품권을 또 하게 되면 세감이 많이 됩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중기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고요. 이게 아마 추정은, 일단 정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이 됐는데 그 자체가 세수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된다고 해도 세수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기업보고 둘 다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줄 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건 기업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차관님 자꾸 상품권을 준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면 기업이 이 상품권을 사서 그냥 직원들한테 주기만 해도 이거 다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업무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천하람 위원 업무에 써야 된다는 게 그러면 뭐 그냥 직원한테 예를 들면 격려비, 격려차로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그걸 가지고 회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뭘니까, 업무에 써야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대방이 있는, 업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주는……

○천하람 위원 거래 상대방에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에 갔다 하면 전남 지역에 주는, 거기 있는 직원한테 주는 거지요, 그 상대방한테.

○천하람 위원 거래 상대방에게 줘도 된다,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그게 업무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최은석 위원 아니, 꼭 거래 상대방한테 안 주고 회사 임직원 격려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른 업무로도 연관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석 위원 회사 임직원 격려를 위해서라도……

○천하람 위원 격려를 위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최은석 위원 줘도 될 걸요, 아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격려는 복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복리후생비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복리후생비로, 다른 항목입니다.

○천하람 위원 다른 항목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걱정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게 지역 제한이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 그

려면 우리 동네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텐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이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지역은 이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배제되는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그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에는 기업의 선택인데요. 그 상대방한테 줄 때 그분이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걸 쓰라고 주는 게……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지 아주 외딴 데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줄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역별로 더 편차를 뒤서 많이 만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방금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지역에서 쓰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쓰니까 전국의 특정 지역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몰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간다 이런 발상으로 이야기하신 거라고 믿고 실제 그렇게 작동된다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정책을 그렇게 설계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특정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온누리상품권이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고 더 다양한 형태로서 선택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천하람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이 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었을 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규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논의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수 위원님들 의견이 같이 해서 기업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아직 안 계셨는데, 기업이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빼고는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 재론을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재의할까요?

○**오기형 위원** 예, 그래서 준비를, 저쪽 정부가 어떤 생각인지 고민 한번 하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시지요.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기재부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간사 간 협의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뭐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등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안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요. 216페이지에 주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전략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개정안들입니다. 관련해서는 218페이지와 219페이지에 그 안에 대해서 간략히 쟁점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공제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발의하신 안건별로 공제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등등 전체를 사용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발의하신 안도 있고 그리고 판매처에 대해서도 국내 판매분에 한정하는 안도 있고 관련 없이 무관하게 제안을 하신 안도 있습니다. 공제수준도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였고요. 공제요건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한도 그리고 적용기한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후에 논의하셨던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특례와 관련된 규정도 이번 세액공제안에 같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용역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굉장히 검토할 게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은 이게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생산을 그냥 좀 어려운 데 도와줄 건지,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하게 할 건지 이런 목적부터 다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것을 비교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용역 하는 것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예상되니까? 용역 결과.

○소위원장 박수영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지 물으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2월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단 저희가 원하는 결과일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드는……

○**최은석 위원** 용역에 원하는 결과가, 용역이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되지 원하는 결과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최은석 위원** 아니, 무심결에 지금 어느 방향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만드는 데 3년의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계실 동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보다는 서두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쨌든 용역을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세제실장님처럼 선입견 가지면 안 되니까 제대로 용역 해서 용역 중간에 결과도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정부 협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최은석 위원** 용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리 기재위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용역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협의도 필요하고 기재위에 보고도 해야 되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최소한 저희 정부 포지션이 정해져야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일관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정부 측 사정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대외비 아니라면 위원님 실로 보내 주십시오, 각자 읽어 보시도록. 대외비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검토…… 공무원 검토는 안 한다는 뜻인데……

전문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오늘 안전까지는?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하신 것과 같은 안전이고요. 229페이지에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생산비용 공제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류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것 같은 건이니까 그 안이 포함된 용역에서 같이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오늘 목표했던 것은 20분 먼저 끝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아침 9시던가요? 오늘 회의는 마치고 주말 잘 쉬시고 24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또 저녁 10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말 꼭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형일 차관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보좌진도……

○소위원장 박수영 보좌진? 보좌진은 뭐 위원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앉아 계신 보좌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보좌진은 안 들어오고 좀 놔주면 안 될까요, 밖에 가서 계시도록?

○정태호 위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좌진은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김영환 위원 아니,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안도걸 위원 공부하러 오신 거지.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오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의무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것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정일영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